

소속부처	기획재정부	성명	조용래
훈련과정	학위	파견일자	2016.6.2
훈련국가	미국	보고분야	경제
보고 주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선진 조세체계 구축		

---

#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선진 조세체계 구축

---

2018. 5.



# 목 차



## I. 서론 ..... 9

- 1. 연구목적
- 2. 경제 여건 분석
- 3. 재정 여건 분석
- 4. 조세부담률 분석
- 5. 시사점
- 6. 참고문헌

## II. 소득세제 ..... 20

### 1 소득세제 변화과정과 특징 ..... 20

- 1. 소득세율 및 과표구간의 변화
- 2. 소득세 세수비중 변화
- 3. 소득세 재분배효과 분석
- 4.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 분석

### 2 주요국의 소득세제 특징 분석 ..... 34

- 1. 세율 체계 및 과세구간 비교
- 2. 주요국의 소득세율 변동 동향
- 3. 소득세 세수 추이 및 세부담 수준 분석
- 4. 주요국의 소득재분배 지표 분석
- 5. 미국 소득세제 최근 현황 분석

### 3 소득세제 관련 정책 제언 ..... 51

- 1. 현행 조세부담 수준에 대한 정책 제언
- 2. 소득세 재원 기능강화에 대한 정책 제언
- 3.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에 대한 정책 제언
- 4. 면세자 비율 축소에 대한 정책 제언



## 목 차



III. 법인세제 .....	54
<b>1 법인세제 변화 과정 및 특징</b> .....	54
1. 법인세율 및 과표구간의 변화	
2. 법인세 세수비중 변화	
3. 법인세 재분배효과 분석	
<b>2 주요국의 법인세제 특징 및 시사점</b> .....	62
1. 세율 체계 및 과세구간 비교	
2. 주요국의 법인세율 변동 동향	
3. 법인세 세수 추이 및 세부담 수준 분석	
4. 미국 법인세제 최근 현황 분석	
<b>3 현행 법인세제 특징 및 주요 정책 과제</b> .....	77
1. 법인세 재원 기능강화에 대한 정책 제언	
2. 법인세 재분배 기능 강화에 대한 정책 제언	
IV. 부가가치세제 .....	79
<b>1 부가가치세제 변화 과정 및 특징</b> .....	79
1. 부가가치세 및 세율	
2. 부가가치세 세수비중 변화	
3.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등	



## 목 차



### **2 주요국의 부가가치세제 특징 및 시사점** ..... 86

1. 세율 체계 비교
2. 주요국의 부가가치세율 변동 동향
3. 부가가치세 세수 추이 및 세부담 수준 분석
4. 외국과의 면세범위 비교
5. 미국 부가가치세제 현황 분석

### **3 현행 부가가치세제 특징 및 주요 정책 과제** ..... 106

1. 부가가치세 재원 기능강화에 대한 정책 제언
2.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에 대한 정책 제언



## 표목차



〈표 1〉 '81 ~ '13년 조세·국민부담률 (GDP 대비 %) .....	9
〈표 2〉 중기('15 ~ '19년) 국세수입 전망 .....	13
〈표 3〉 중기('16 ~ '20년) 국세수입 전망 .....	13
〈표 4〉 중기('16 ~ '20년) 조세부담률 전망 .....	14
〈표 5〉 조세부담률 전망 추이 .....	15
〈표 6〉 주요국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11년 기준) .....	16
〈표 7〉 주공공사회복지지출 구성 전망 .....	17
〈표 8〉 '16 ~ '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지표 .....	18
〈표 9〉 '94~'07년 과표구간별 소득세율 변화 .....	21
〈표 10〉 '96~'07년 과표구간별 소득세율 변화 .....	21
〈표 11〉 '08~'11년 과표구간별 소득세율 변화 .....	22
〈표 12〉 '08~'11년 과표구간별 소득세율 변화 .....	23
〈표 13〉 '08~'17년 과표구간별 소득세율 변화 .....	23
〈표 14〉 '01~'07년 소득세 세수비중 변화 .....	24
〈표 15〉 '08~'12년 소득세 세수비중 변화 .....	25
〈표 16〉 '13~'16년 소득세 세수비중 변화 .....	26
〈표 17〉 '07~'11년 지니계수 및 개선율 .....	27
〈표 18〉 '12~'16년 지니계수 및 개선율 .....	28
〈표 19〉 '07~'11년 소득5분위 배율 및 개선율 .....	29
〈표 20〉 '12~'16년 소득5분위 배율 및 개선율 .....	29
〈표 21〉 '07~'11년 상대적 빈곤율 및 개선율 .....	30
〈표 22〉 '12~'16년 상대적 빈곤율 및 개선율 .....	31
〈표 23〉 '09~'13년 소득세 면세자 비율 .....	32
〈표 24〉 '13~'16년 소득세 면세자 비중 .....	32
〈표 25〉 '10~'14년 과세자 1인당 세부담 및 증가율 .....	33



## 표목차



〈표 26〉 OECD 국가 소득세율 구조 비교 [ '14년 기준] .....	34
〈표 27〉 OECD 국가 소득세 최고세율 비교 [ '14년 기준] .....	35
〈표 28〉 지방세 포함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 비교 .....	36
〈표 29〉 주변국 소득세 최고세율 비교 .....	36
〈표 30〉 OECD 국가 1인당 GDP 대비 최고구간과표 배율 비교 .....	37
〈표 31〉 '00년 이후 OECD 회원국의 소득세율 변화 .....	39
〈표 32〉 '08년 이후 소득세율 인상 OECD 회원국 현황 .....	40
〈표 33〉 '08년 이후 소득세율 인하 OECD 회원국 현황 .....	40
〈표 34〉 '15년 기준 OECD 국가 소득세수 비중 .....	42
〈표 35〉 OECD 국가 소득세수 비중 변화 .....	43
〈표 36〉 우리나라 총조세 대비 소득세수 비중 추이 .....	44
〈표 37〉 주요국의 지니계수 개선율 .....	45
〈표 38〉 소득 상위 1% 소득 및 세부담 비중 현황 .....	46
〈표 39〉 주요 선진국 상대적 빈곤율 비교 .....	46
〈표 40〉 트럼프 대선공약에서 제시한 소득세율 개편안 .....	48
〈표 41〉 G7국과 우리나라 개인소득세 법정최고세율 .....	49
〈표 42〉 우리나라/OECD 조세·국민부담률 수준 .....	51
〈표 43〉 '80~'07년 법인세율 변화 .....	55
〈표 44〉 '07~'11년 법인세율 변화 .....	56
〈표 45〉 '12~'18년 법인세율 변화 .....	57
〈표 46〉 '80~'14년 법인세수 실적 변화 .....	58
〈표 47〉 '80~'14년 법인세수 증가율 변화 .....	59
〈표 48〉 '03~'16년 총조세대비 법인세 비중 변화 .....	59
〈표 49〉 '09~'16년 GDP 대비 법인세 비중 변화 .....	60
〈표 50〉 소득별 법인세수 분석 .....	61



## 표목차



〈표 51〉 단일세율 법인세 구조 OECD 국가 .....	62
〈표 52〉 2단계 세율 법인세 구조 OECD 국가 .....	63
〈표 53〉 3단계 이상 세율 법인세 구조 OECD 국가 .....	64
〈표 54〉 OECD 국가 법인세 최고세율 현황 .....	65
〈표 55〉 주변 국가 법인세 최고세율 현황 .....	65
〈표 56〉 '00년 이후 OECD 회원국의 법인세율 변화 .....	66
〈표 57〉 최근 법인세율 인하 OECD 회원국 현황 .....	67
〈표 58〉 최근 법인세율 인상 OECD 회원국 현황 .....	68
〈표 59〉 OECD 국가 법인세수 비중 ( '15년 기준) .....	70
〈표 60〉 '00~'14년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 추이 .....	70
〈표 61〉 OECD 국가별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 .....	71
〈표 62〉 '65~'00년 OECD 국가별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 .....	72
〈표 63〉 '05~'14년 OECD 국가별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 .....	74
〈표 64〉 G7국 및 우리나라 법인세 법정최고세율 .....	75
〈표 65〉 우리나라/OECD 법인세수 비중 비교 .....	77
〈표 66〉 소득 상위 법인 소득금액 비중 분석 .....	78
〈표 67〉 '00~'14년 부가가치세 세수 비중 변화 .....	80
〈표 68〉 기초 생필품 용역 부가가치세 부과 현황 .....	83
〈표 69〉 국민후생용역 부가가치세 부과 현황 .....	83
〈표 70〉 문화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현황 .....	84
〈표 71〉 생산요소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현황 .....	85
〈표 72〉 기타 물품 부가가치세 부과 현황 .....	85
〈표 73〉 OECD 국가별 부가가치세 부과 현황 .....	86
〈표 74〉 '00년 이후 OECD 회원국의 부가가치세율 변화 .....	87
〈표 75〉 '08년 이후 OECD 회원국의 세율 변동 현황 .....	87



## 표목차



〈표 76〉 '09~'16년 부가가치세율 인상 OECD 회원국 현황 .....	88
〈표 77〉 '09~'16년 부가가치세율 인상 OECD 회원국 현황 .....	89
〈표 78〉 '09~'16년 부가가치세율 유지 OECD 회원국 현황 .....	89
〈표 79〉 '14년 OECD 주요국 총조세 대비 일반소비세 비중 현황 ...	91
〈표 80〉 OECD 국가별 기초생필품 용역 면세범위 비교 .....	92
〈표 81〉 OECD 국가별 국민후생용역 면세범위 비교 .....	93
〈표 82〉 OECD 국가별 문화 관련 재화·용역 면세범위 비교 .....	96
〈표 83〉 OECD 국가별 생산요소 및 기타 재화·용역 면세범위 비교	98



# I. 서론

## 1 연구목적

-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각각 OECD 국가 중 4번째('12년)로 낮은 상황에서 국제적 기준에 맞는 과세제도 정비를 통해 효율적이고 공평한 과세체계를 만들고자 함에 그 연구 목적이 있음
- 특히, 소득과세(소득세·법인세)의 경우 OECD국가와 비교하여 세수입 비중이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인 현실을 감안할 때 과세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 표 1 : '81~'13년 조세·국민부담률 (GDP 대비 %) >

구분		'81~'85 평균(A)	'86~'90 평균	'91~'95 평균	'96~'00 평균	'01~'05 평균	'06~'10 평균	'11	'12	'13
한국	조세부담률	15.7	15.2	16.3	16.8	17.8	18.7	18.4	18.7	17.9
	국민부담률	15.9	16.0	18.5	19.9	22.2	24.0	24.0	24.8	24.3
OECD 평균	조세부담률	24.0	25.0	24.7	25.4	25.0	24.8	24.4	24.7	-
	국민부담률	31.3	32.5	33.2	34.1	33.7	33.5	33.3	33.7	-

※ (출처) OECD Revenue Statistics('14), OECD Tax Database

- 최근 정치권에서도 세입을 확충하고 복지지출 등 미래 재정수요 대비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재원마련의 대안으로 법인세율 인상, 비과세·감면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소득·법인세제 등 과세제도 정비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의 중장기 조세정책 수립에 대한 기초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소득·법인·부가가치세에 대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조세부담 수준과 세수입 구성 및 과세체계 등 사례를 분석 및 평가
  - 또한, 소득·법인세에 대한 현행 세제 평가를 통해 동 세목에 대한 효율성, 형평성, 조세부담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조세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정책 제언
  
- 현재 정부는 국세기본법 개정('14.1.1)에 따라 5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국회에 보고 중에 있음
  - 미국 등 선진국의 조세지원제도 운영·개선사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조세지원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정부 세입예산 수립에 적극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

(참고) 국세기본법(제20조의2(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세정책의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매년 해당 연도부터 5개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이하 이 조에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②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세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주요 세목별 조세정책 방향
3. 비과세·감면 제도 운용 방향
4. 조세부담 수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 경제 여건 분석<sup>1)</sup>

- (경제성장률) 우리나라는 '90년대 이후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으며, '00년대 이후 잠재성장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 연평균 실질성장률은 80년대 10.2%에서 90년대 6.6%, 00년대 4.4%, 최근 2.8%('11~'16)으로 크게 감소
  - 잠재성장률 역시 한국개발연구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4.6% ('01~'05년)에서 3.0% ('16~'20)년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 (인구구조) 합계출산율은 '90년 1.57명에서 '00년 1.57명 → '10년 1.23명 → '14년 1.21명 → '15년 1.24명 → '16년 1.17명으로 세계 최하위권을 기록
  - 생산가능인구수 역시 '17년 3,758만 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
  - \* 생산가능인구(천명, 전망) : ('25) 35,349 ('35) 30,755 ('45) 25,821
  
- (일자리) 전체 실업률은 '00년 4.4%에서 '05년 3.7% → '10년 3.7 → '15년 3.6% → '16년 3.7%로 다소 안정화 추세
  - 청년 실업률 '16년 9.8%로 '00년 8.1% 대비 1.7%p 증가\*하는 등 채용 감소 영향으로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의 취업 문제가 심화
  - \* 청년 실업률(%) : ('00) 8.1 → ('05) 8.0 → ('10) 8.0 → ('15) 9.2 → ('16) 9.8

1)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기획재정부('15년, '17년)

□ (소득재분배) 지니계수가 '15년 0.295에서 '16년 0.304로 다소 상승하는 등 고용둔화의 영향으로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하면서 지니계수 등 주요 분배지표\*가 악화

\* 지니계수: ('11) 0.311 ('12) 0.307 ('13) 0.302 ('14) 0.302 ('15) 0.295 ('16) 0.304

○ 특히, 우리나라의 조세·재정지출 소득분배 개선효과는 13.5%('15년)으로 미국(22.4%), 영국(31.3%), 독일(42.2%) 등 선진국과 비교 시 낮은 수준

### 3 재정 여건 분석<sup>2)</sup>

□ (재정수요) 정부는 인구 구조의 변화 등으로 사회복지지출의 지속적인 증가로 향후 국가재정 비용이 크게 소요될 가능성 있다고 전망

○ 세계 최하위권의 출산율\*과 함께 생산가능인구의 노령화도 급속 진행

\* 합계출산율(명) : ('90) 1.57 ('00) 1.47 ('10) 1.23 ('14) 1.21 ('15) 1.24 ('16) 1.17

○ 복지지출은 현행 수준만 유지하더라도 고령화 등으로 '40년대에는 20.1% 수준으로 예측되어 OECD 평균 21.4%('11년 기준) 수준에 도달할 전망<sup>3)</sup>

□ (중기 국세수입) 정부는 '16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서 '16년 기준 세법 체계가 유지 될 경우 국세수입이 연평균 5.6%씩 증가하여 '20년 277.2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

○ '16년 232.7조원 → '17년 241.8조원 → '18년 252.1조원 → '19년 264.5조원 → '20년 277.2조원으로 연평균 5.6%씩 증가 예상

2)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기획재정부('15년 ~ '17년)

3) 사회보장위원회('16.12월)

- '16~'20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세수입은 '15~'19계획 대비 매년 +8~9조원 증가하고 연평균증가율도 상승(3.7%→5.6%)할 전망

< 표 2 : 중기('15~'19년) 국세수입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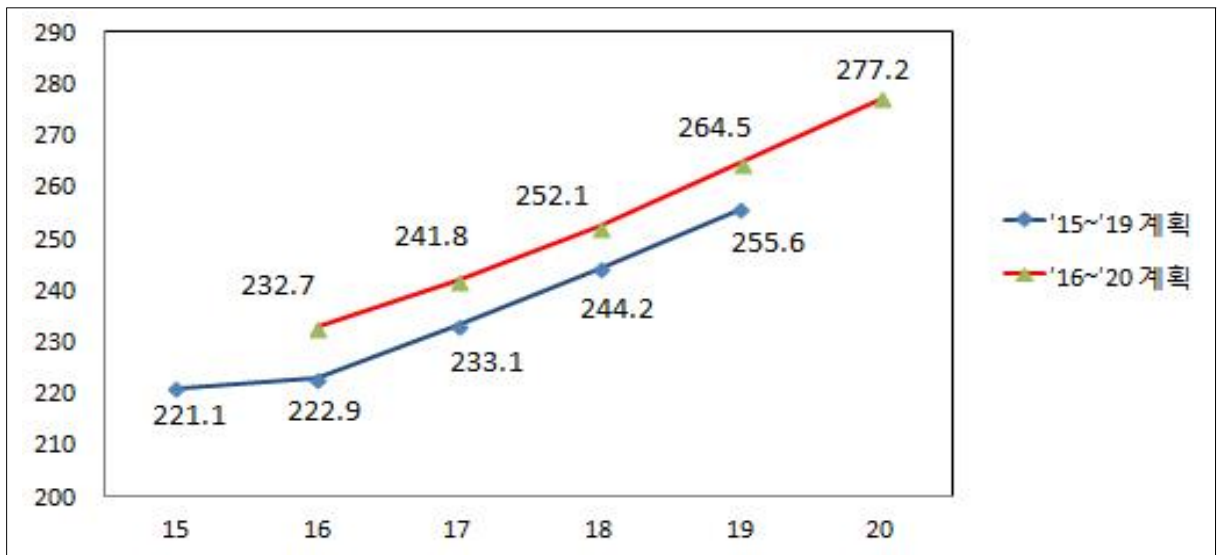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연평균
국세수입(조원)	215.7	223.1	233.2	244.2	255.6	
(증가율, %)	(5.0)	(3.4)	(4.5)	(4.7)	(4.7)	(4.3)

< 표 3 : 중기('16~'20년) 국세수입 전망 >

구 분	'16	'17	'18	'19	'20	연평균 증가율
'15~'19 계획(조원)	222.9	233.1	244.2	255.6	-	3.7%*
'16~'20 계획(조원)	232.7	241.8	252.1	264.5	277.2	5.6%*
'15~'19계획 대비 (조원, %p)	+9.8	+8.7	+7.9	+8.9		+1.9%p

\* '15년, '16년 본예산 대비

< 그림 1 : 중기('16~'20년) 국세수입 전망 >



## 4 조세부담률 분석4)

□ (정부 전망) 중기 조세부담률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국세수입도 증가 하면서 18.8~18.9%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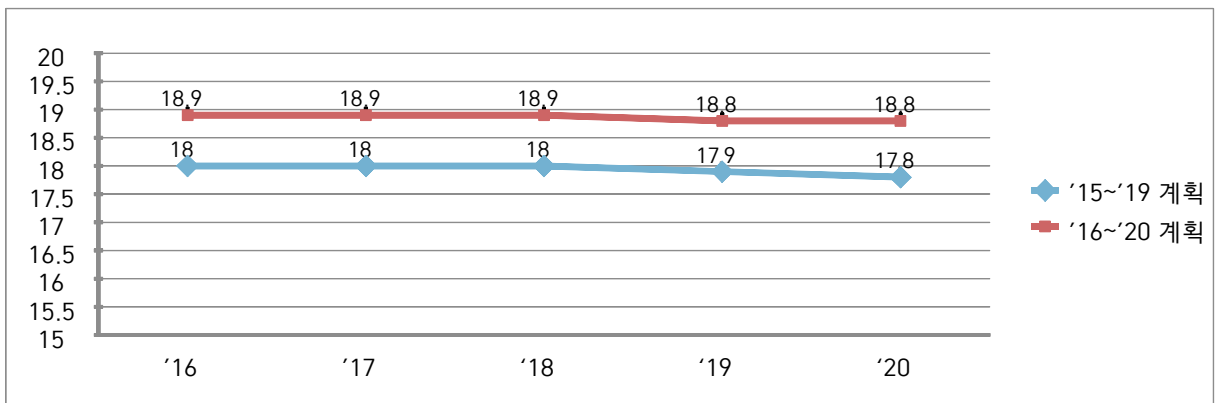
- 당초 '15~'19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중기 조세부담률은 '16년 18.0%, '17년 18.0%, '18년 17.9%, '19년 17.8%로 17.8%~18.0%로 전망
- 하지만, '16년 국세수입 실적 개선 전망 등으로 '16~'20 국가재정운용 계획의 중기 조세부담률은 '15~'19계획 대비 0.9~1.0%p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수정

< 표 4 : 중기('16~20년) 조세부담률 전망 >

구 분	'16	'17	'18	'19	'20
'15~'19 계획(%)	18.0	18.0	17.9	17.8	-
'16~'20 계획(%)	18.9	18.9	18.8	18.8	18.8
'15~'19계획 대비 (%p)	+0.9	+0.9	+0.9	+1.0	-

\* 지방세는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증가 전제

< 그림 2: 중기 조세부담률 전망 >



4)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기획재정부('15년 ~ '17년) 및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연구(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1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망) '60년까지의 조세부담률 분석을 통해 조세 부담률 수준이 중기적으로 낮아지나 장기적으로 현행 수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전망

○ '15년 19.49%에서 '20년 19.25%로 하락한 이후, '30년 19.44% → '40년 19.47% → '50년 20.00% → '60년 20.13% 수준에 도달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예측

○ 이는 현행 조세구조가 물가연동이 없는 누진적 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어 조세부담률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로 장기적으로 조세부담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

< 표 5 : 조세부담률 전망 추이 > (단위: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9.49	19.15	18.95	18.81	18.69	19.25	19.25	19.26	19.28	19.30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19.31	19.34	19.36	19.39	19.42	19.44	19.47	19.49	19.52	19.55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19.58	19.60	19.63	19.67	19.70	19.74	19.77	19.80	19.83	19.86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19.89	19.92	19.94	19.96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
'55	'56	'57	'58	'59	'60				
20.06	20.07	20.08	20.10	20.11	20.13				

※ (출처)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연구(총괄편),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 (OECD 국가와 국민부담 비교) 우리나라는 현재는 고령화 수준이 낮고, 연금제도 역시 성숙도가 낮아 고령화 관련 연금·보험 지출수준이 낮은 상황으로 조세부담률이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 복지지출(노령자·건강분야)은 OECD 평균은 13.6%이나, 우리나라는 그 절반인 6.1% 수준 ('11년, OECD SOCX)

○ 또한,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은 '13년 기준으로 25.8%이나, 우리나라는 그보다 7.9%p 낮은 17.9% 수준

- 참고로 '11년도 주요국의 조세부담률을 비교해보면, 미국(18.5%), 일본(19.8%), 영국(29.1%), 프랑스(27.4%)로 우리나라(18.0%)와 비교하여 모두 높은 수준이며, OECD 평균은 25.0%를 기록

○ 국민부담률은 '13년 기준으로 OECD 평균 34.1%로 우리나라는 9.8%p 낮은 24.3%를 기록

- 참고로 '11년도 주요국의 국민부담률의 경우 우리나라는 24.8%로 미국(24.0%)을 제외한 일본(28.6%), 영국(35.7%), 프랑스(44.1%)보다 낮은 수준이며, OECD 평균은 34.1%를 기록

< 표 6 : 주요국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11년 기준) >

구 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OECD (평균)
조세부담률(%)	18.0	18.5	19.8	29.1	27.4	25.0
국민부담률(%)	24.8	24.0	28.6	35.7	44.1	34.1

※ (출처) OECD Revenue Statistics, 2013



-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선진국은 사회보장 기여금 수입보다 고령화 관련 연금·보험 지출이 초과하여 부족분을 조세 등으로 조달
- 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 비율은 OECD 평균 8.9%(우리나라 5.8%)이지만, 복지지출(노령자·건강분야)은 OECD 평균 13.6%(우리나라 6.1%)임 (OECD SOCX, '11년 기준)
- 또한, 사회보장위원회는 현행 복지제도를 유지('13년 현행제도 유지를 전제)만 하더라도 고령화와 연금제도 성숙으로 '40년경 복지지출(22.6%)은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 표 7 : 주공공사회복지지출 구성 전망 >

(단위: GDP대비 %, 구성비 %)

구 분	'20	'30	'40	'50	'60
공공사회복지지출	12.9	17.9	22.6	26.6	29.0
· 일반복지지출 (구성비)	3.8 (29.6)	4.6 (25.6)	5.1 (22.5)	5.4 (20.5)	5.7 (19.8)
· 사회보험분야 (구성비)	9.1 (70.4)	13.3 (74.4)	17.5 (77.5)	21.2 (79.5)	23.2 (80.2)

※ (출처) 사회보장위원회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14.1.28.)

**참고1**

**16~20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지표<sup>5)</sup>**

< 표 8 : '16~'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지표> (단위 : 조원, %)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연평균
	본예산	추경안					
■ 총수입	391.2	401.0	414.5	436.0	456.3	476.4	5.0
○ 국세수입	222.9	232.7	241.8	252.1	264.5	277.2	5.6*
○ 세외수입	27.2	27.2	26.2	28.2	27.1	26.2	△0.9
○ 기금수입	141.1	141.1	146.6	155.8	164.7	173.0	5.2
(조세부담률)	18.3	18.9	18.9	18.8	18.8	18.8	
(국민부담률)	25.1	25.7	26.1	26.2	26.4	26.4	
■ 총지출	386.4	398.6	400.7	414.3	428.4	443.0	3.5
(증가율)	(2.9)	(6.2)	(3.7)	(3.4)	(3.4)	(3.4)	
■ 관리재정수지**		△39.1	△28.1	△25.0	△23.2	△20.4	
(GDP 대비 %)		(△2.4)	(△1.7)	(△1.4)	(△1.2)	(△1.0)	
■ 국가채무**		637.8	682.7	722.5	756.8	793.5	
(GDP 대비 %)		(39.3)	(40.4)	(40.9)	(40.7)	(40.7)	

\* '16년 본예산 대비 증가율 / \*\* '16년은 추경예산안 기준

5)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기획재정부('16년)

## 5 시사점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조세부담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기반 확충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
- 특히 세수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득세·법인세에 대한 세입기반 확충이 중요
- 또한, 소득세·법인세에 대한 형평성 개선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문제에 대한 논의도 병행할 필요

## 6 참고문헌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연구, 기획재정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5.12월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기획재정부, '15년 ~ '17년
- 조세개요, 기획재정부, '17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트럼프 세계개편안의 주요 내용 및 평가, '17.5.10
- OECD, Revenue Statistics, 2011~2015

## II. 소득세제

### 1 소득세제 변화과정과 특징

#### (1) 소득세율 및 과표구간의 변화

- '90년대 이전에는 높은 최고세율(50~70%) 하에서 세원양성화 효과 등을 감안하여 세율 및 과표구간을 조정
  - '75~'76 : 16단계(최저 24만원 이하 8%, 최고 4,800만원 초과 70%)
  - '77 : 16단계(최저 42만원 이하 8%, 최고 5,760만원 초과 70%)
  - '78~'79 : 17단계(최저 60만원 이하 8%, 최고 8,400만원 초과 70%)
  - '80~'81: 17단계(최저 120만원 이하 6%, 최고 6,000만원 초과 62%)
  - '82 : 17단계(최저 120만원 이하 6%, 최고 6,000만원 초과 60%)
  - '83~'88 : 16단계(최저 180만원 이하 6%, 최고 6,000만원 초과 55%)
  - '89~'90 : 8단계(최저 250만원 이하 5%, 최고 5,000만원 초과 50%)
- 2000년대 이후에는 외환·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과표구간 조정 및 소득세율 인하하는 등 감세정책 기조로 전환
  - '96년 이후 6단계였던 과표구간을 4단계로 단순화하고, 과표구간별 세율도 인하

- '02년도 이후 각 과표구간별 세율을 1~4%p 인하
- '05년도 이후 각 과표구간별 세율을 1%p 인하

< 표 9 : '94~'07년 과표구간별 소득세율 변화 >

'94~'95	'96~'01	'02~'04	'05~'07
6 단계	4 단계	4 단계	4 단계
400만원이하 5%	-	-	-
800 ㄴ 9	1,000만원이하 10%	1,000만원이하 9%	1,000만원이하 8%
1,600 ㄴ 18			
3,200 ㄴ 27	4,000 ㄴ 20	4,000 ㄴ 18	4,000 ㄴ 17
6,400 ㄴ 36	8,000 ㄴ 30	8,000 ㄴ 27	8,000 ㄴ 26
6,400만원초과 45	8,000만원초과 40	8,000만원초과 36	8,000만원초과 35

< 표 10 : '96~'07년 과표구간별 소득세율 변화 >

구 분		'96~'01년	'02~'04년	'05~'07년
과표 구간	1,000만원이하	10%	9%(△1%p)	8%(△1%p)
	4,000만원이하	20%	18%(△2%p)	17%(△1%p)
	8,000만원이하	30%	27%(△3%p)	26%(△1%p)
	8,000만원초과	40%	36%(△4%p)	35%(△1%p)

- '08년도 이후에는 과표구간을 인상(10~20%)하여 1,000만원~8,000만원 과표구간이 1,200만원~8,800만원 과표구간으로 변화하였으며, 최고세율을 제외한 소득세율도 과표구간별로 1~2%p 인하
- '12년부터 최고세율을 2%p 인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1년 세법개정시 8,800만원 초과구간은 35%로 유지하기로 결정

< 표 11 : '08~'11년 과표구간별 소득세율 변화 >

구 분		'08년	'09년	'10~'11년
과표 구간	1,200만원이하	8%	6%(△2%p)	6%
	4,600만원이하	17%	16%(△1%p)	15%(△1%p)
	8,800만원이하	26%	25%(△1%p)	24%(△1%p)
	8,800만원초과	35%	35%	35%

- '12년 이후에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요구와 악화되는 소득재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 인하 및 세율 인상을 지속
- '13년 세법개정시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 인하 (3억원→1.5억원)
- '16년 세법개정시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 및 최고세율 신설 (5억원, 40%)

< 표 12 : '08~'11년 과표구간별 소득세율 변화 >

구 분		'12 ~ '13년	'14 ~ '16년	'17년부터
과표 구간	1,200만원이하	6%	6%	6%
	4,600만원이하	15%	15%	15%
	8,800만원이하	24%	24%	24%
	1.5억원 이하	35%	35%	35%
	3억원 이하		38%(+3%p)	38%
	5억원 이하	38%(+3%p)	38%	
	5억원 초과			

< 표 13 : '08~'17년 과표구간별 소득세율 변화 >

'08	'09	'10	'12	'14	'17
4 단계	4 단계	4 단계	5 단계	5 단계	6 단계
1,200만원이하 8%	1,200만원이하 6%	1,200만원이하 6%	1,200만원이하 6%	1,200만원이하 6%	1,200만원이하 6%
4,600 ♪ 17%	4,600 ♪ 16%	4,600 ♪ 15%	4,600 ♪ 15%	4,600 ♪ 15%	4,600 ♪ 15%
8,800 ♪ 26%	8,800 ♪ 25%	8,800 ♪ 24%	8,800 ♪ 24%	8,800 ♪ 24%	8,800 ♪ 24%
8,800만원초과 35%	8,800만원초과 35%	8,800만원초과 35%	3억원 ♪ 35%	1억5천만원 ♪ 35%	1억5천만원 ♪ 35%
			3억원 초과 38%	1억5천만원 초과 38%	1억5천만원 이하 38%
					5억원 초과 40%

## (2) 소득세 세수비중 변화

□ 소득세 세수비중의 변화는 경기 및 세율의 변동과 소득세법상 과표구간 변화에 영향을 받아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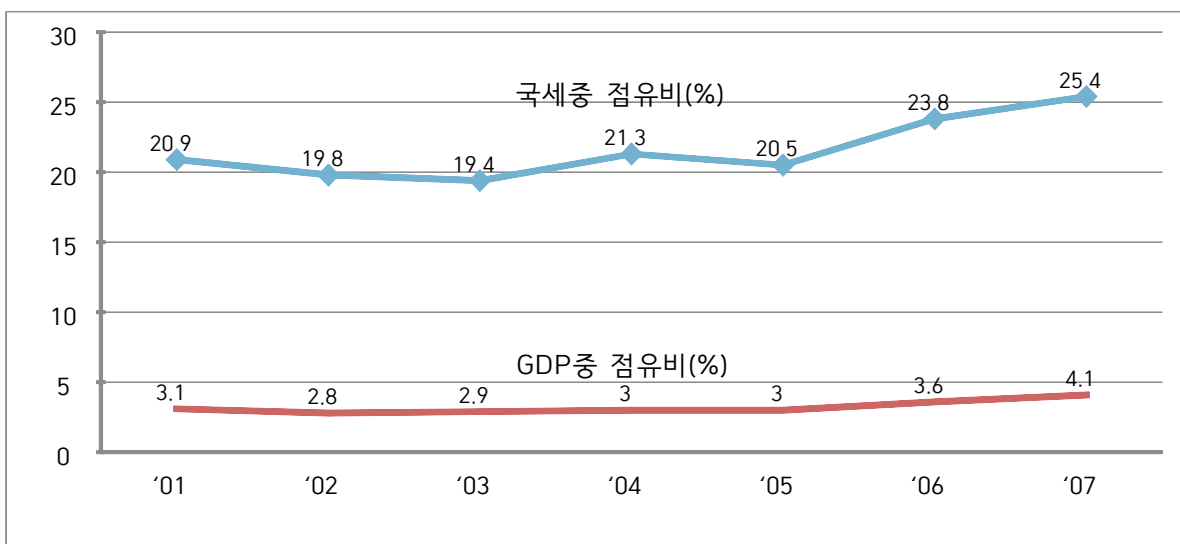
○ '00년대 초반에는 소득세율을 인하했음에도 세원양성화 효과 및 외환위기 이후 경제가 점차 회복하는 과정에서 소득세수 비중이 증가

- 소득세 국세 중 점유비율은 '01년 20.9%에서 '07년 25.4%까지 상승하고, GDP 대비 점유비도 '01년 3.1%에서 '07년 4.1%까지 증가

< 표 14 : '01~'07년 소득세 세수비중 변화 >

분	'01	'02	'03	'04	'05	'06	'07
국세 (조원)	89.3	96.6	107.0	110.2	120.4	130.3	153.1
소득세 (조원)	18.7	19.2	20.8	23.4	24.7	31.0	38.9
국세중 점유비 (%)	20.9	19.8	19.4	21.3	20.5	23.8	25.4
GDP중 점유비 (%)	3.1	2.8	2.9	3.0	3.0	3.6	4.1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및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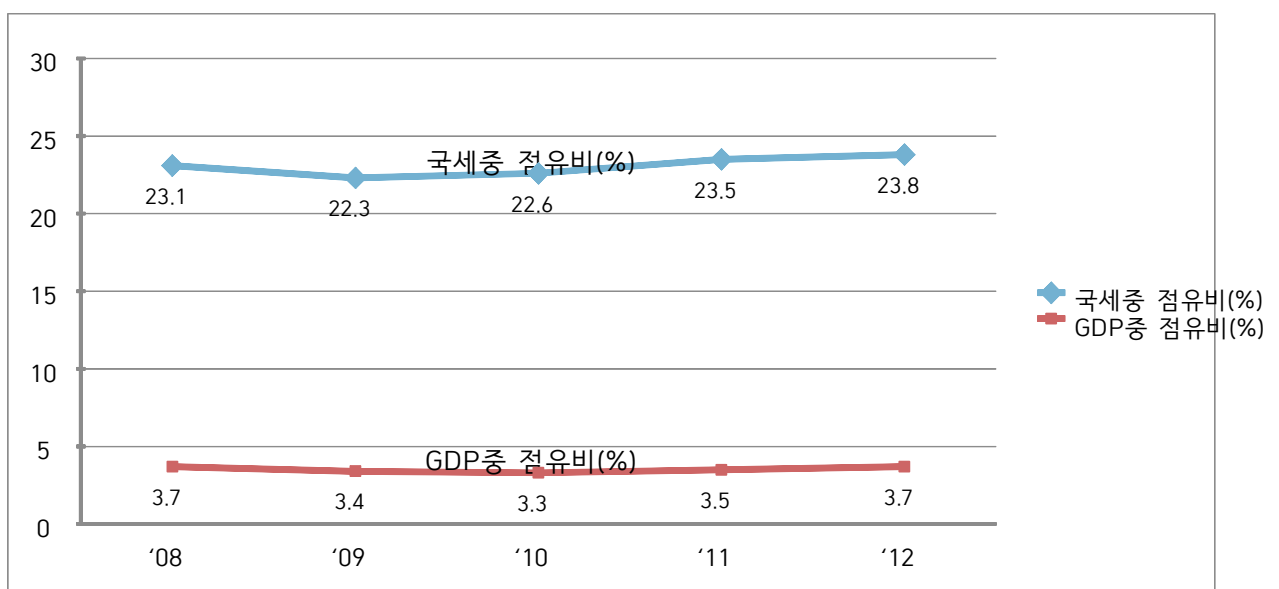


- '08년 이후에 소득세 비중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감세정책에 영향으로 줄어드는 추세로 전환하였다가 이후 점차 회복하는 과정을 보임
  - 소득세 국세 중 점유비는 '08년 23.1%에서 '10년 22.6%로 감소 후 '12년 23.8%로 다소 회복
  - 또한, GDP 대비 국세 중 점유비 역시 '08년 3.7%에서 '10년 3.3%로 감소 이후 '12년 3.7%로 '08년 수준으로 회복

< 표 15 : '08~'12년 소득세 세수비중 변화 >

분	08	'09	'10	'11	'12
국세 (조원)	157.5	154.3	166.0	180.2	192.1
소득세 (조원)	36.4	34.4	37.5	42.3	45.8
국세중 점유비 (%)	23.1	22.3	22.6	23.5	23.8
GDP중 점유비 (%)	3.7	3.4	3.3	3.5	3.7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및 OECD Tax database



○ '13년도 이후에는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 인하 및 세율 인상으로 소득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 소득세 국세 중 점유비는 '13년 23.7% → '14년 25.9% → '15년 27.9% → '16년 28.2%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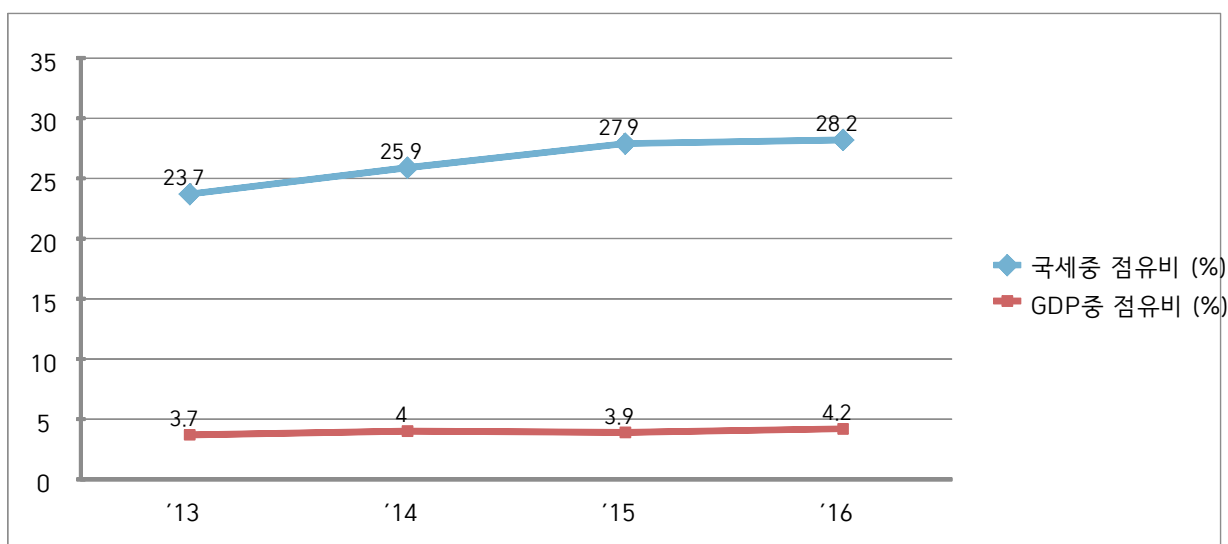
- GDP 대비 국세 중 점유비 역시 '13년 3.7% → '14년 4.0% → '15년 3.9% → '16년 4.2%로 상승

< 표 16 : '13~'16년 소득세 세수비중 변화 >

분	13	'14	'15	'16
국 세 (조원)	201.9	205.5	217.9	242.6
소득세 (조원)	47.8	53.3	60.7	68.5
국세중 점유비 (%)	23.7	25.9	27.9	28.2
GDP중 점유비 (%)	3.7	4.0	3.9	4.2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및 OECD Tax database

< 그림 5 : '13~'16년 소득세 세수비중 변화 >



### (3) 소득세 재분배효과 분석

- (의의) 소득세 운영에 있어 조세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소득 재분배를 위한 형평성에 대한 요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니계수·소득 5분위 배율·상대적 빈곤율 등 대표적인 소득재분배 지표를 분석
- (지니계수 개선율)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 이전소득)과 가처분소득(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공적 비소비지출)의 변화를 비교한 것으로 정부의 조세와 재정효과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가능
  - '07년~'11년 전체가구(1인 및 농가포함) 지니계수는 0.340에서 0.342로 다소 증가하여 소득재분배 상황이 악화되었으나, 지니계수 개선율은 8.2%에서 9.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

< 표 17 : '07~'11년 지니계수 및 개선율 >

구 분		'07	'08	'09	'10	'11
전체 가구 (1인 및 농가포함)	시 장 소 득	0.340	0.344	0.345	0.341	0.342
	가 처 분 소 득	0.312	0.314	0.314	0.310	0.311
	개 선 율 (%)	8.2	8.7	9.0	9.1	9.1
전국 가구 (2인이상 비농가)	시 장 소 득	0.321	0.323	0.320	0.314	0.313
	가 처 분 소 득	0.295	0.296	0.294	0.288	0.288
	개 선 율 (%)	8.1	8.4	8.1	8.3	8.0

※ 개선율 = (시장소득 지니계수 -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시장소득 지니계수\*100

※ 통계청 자료 참고

- '12년~'16년 전체가구(1인 및 농가포함) 지니계수는 0.338에서 0.353로 크게 증가하여 소득재분배 문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하지만 지니계수 개선율 역시 9.2%에서 13.9%로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소득세율 인상 등 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

< 표 18 : '12~'16년 지니계수 및 개선율 >

구 분		'12	'13	'14	'15	'16
전체 가구 (1인 및 농가포함)	시 장 소 득	0.338	0.336	0.341	0.341	0.353
	가 처 분 소 득	0.307	0.302	0.302	0.295	0.304
	개 선 율 (%)	9.2	10.1	11.4	13.5	13.9
전국 가구 (2인이상 비농가)	시 장 소 득	0.311	0.308	0.309	0.307	0.318
	가 처 분 소 득	0.285	0.280	0.278	0.270	0.279
	개 선 율 (%)	8.4	9.1	10.0	13.7	12.3

※ 개선율 = (시장소득 지니계수 -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시장소득 지니계수\*100

※ 통계청 자료 참고

□ (소득5분위 배율) 상위 소득 20%와 하위 소득 20%를 비교한 소득

- 지니계수 개선율과 유사하게 '07년~'11년 전체가구 소득5분위 배율은 7.09에서 7.86로 증가하여 소득재분배 상황이 악화되었으나, 소득5분위 배율 개선율은 21.0%에서 27.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

< 표 19 : '07~'11년 소득5분위 배율 및 개선율 > (단위 : %)

구 분		'07	'08	'09	'10	'11
전체 가구 (1인 및 농가포함)	시 장 소 득	7.09	7.38	7.70	7.74	7.86
	가 처 분 소 득	5.60	5.71	5.75	5.66	5.73
	개 선 율 (%)	21.0	22.6	25.3	26.9	27.1
전국 가구 (2인이상 비농가)	시 장 소 득	6.05	6.16	6.14	6.03	6.00
	가 처 분 소 득	4.95	4.98	4.95	4.81	4.80
	개 선 율 (%)	18.2	19.2	19.4	20.2	20.0

※ 개선율 = (시장소득 소득5분위배율 - 가처분소득 소득5분위배율)/시장소득 소득5분위배율\*100

※ 통계청 자료 참고

- 또한, '12년~'16년 전체가구 소득5분위 배율은 7.51에서 9.32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소득5분위 배율 개선율 역시 26.2%에서 41.5%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

< 표 20 : '12~'16년 소득5분위 배율 및 개선율 > (단위 : %)

구 분		'12	'13	'14	'15	'16
전체 가구 (1인 및 농가포함)	시 장 소 득	7.51	7.60	8.08	8.24	9.32
	가 처 분 소 득	5.54	5.43	5.41	5.11	5.45
	개 선 율 (%)	26.2	28.6	33.0	38.0	41.5
전국 가구 (2인이상 비농가)	시 장 소 득	5.79	5.72	5.75	5.75	6.37
	가 처 분 소 득	4.69	4.55	4.45	4.22	4.49
	개 선 율 (%)	19.0	20.5	22.6	26.6	29.5

※ 개선율 = (시장소득 소득5분위배율 - 가처분소득 소득5분위배율)/시장소득 소득5분위배율\*100

※ 통계청 자료 참고

□ (상대적 빈곤율) 전체 인구 중에서 소득이 중위소득(인구를 소득 순으로 봤을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소득재분배 지표

○ 지니계수 개선율·소득5분위 배율과 같이 '07년~'11년 전체가구 상대적 빈곤율은 17.3%에서 18.3%로 증가하였으며, 상대적 빈곤율 개선율 역시 14.5%에서 16.9%로 지속적으로 증가

- '09년 18.1% → '10년 18.0%를 제외하고는 5년간 지속적으로 시장소득 상대적 빈곤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다만, 조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가처분소득 상대적 빈곤율의 증가율은 '07년 14.8% → '11년 15.2%로 0.4%p 증가하여 시장소득 상대적 빈곤율 증가율보다 크지 않음

< 표 21 : '07~'11년 상대적 빈곤율 및 개선율 > (단위 : %)

구 분		'07	'08	'09	'10	'11
전체 가구 (1인 및 농가포함)	시 장 소 득	17.3	17.5	18.1	18.0	18.3
	가 처 분 소 득	14.8	15.2	15.3	14.9	15.2
	개 선 율 (%)	14.5	13.1	15.5	17.2	16.9
전국 가구 (2인이상 비농가)	시 장 소 득	15.5	15.0	15.4	14.9	14.9
	가 처 분 소 득	12.9	12.9	13.0	12.5	12.3
	개 선 율 (%)	16.8	14.0	15.6	16.1	17.4

※ 개선율 = (시장소득 상대적 빈곤율 - 가처분소득 상대적 빈곤율)/시장소득 상대적 빈곤율\*100

※ 통계청 자료 참고

○ 또한, '12년~'16년 전체가구 소득5분위 배율은 7.51에서 9.32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소득5분위 배율 개선율 역시 26.2%에서 41.5%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

< 표 22 : '12~'16년 상대적 빈곤율 및 개선율 > (단위 : %)

구 분		'12	'13	'14	'15	'16
전체 가구 (1인 및 농가포함)	시장소득	17.6	17.8	17.9	18.6	19.5
	가처분소득	14.6	14.6	14.4	13.8	14.7
	개선율 (%)	17.0	18.0	19.6	25.8	24.6
전국 가구 (2인이상 비농가)	시장소득	14.3	14.3	13.7	14.5	15.6
	가처분소득	12.2	11.7	11.0	10.4	11.1
	개선율 (%)	14.7	18.2	19.7	28.3	28.8

※ 개선율 = (시장소득 상대적 빈곤율 - 가처분소득 상대적 빈곤율)/시장소득 상대적 빈곤율\*100

※ 통계청 자료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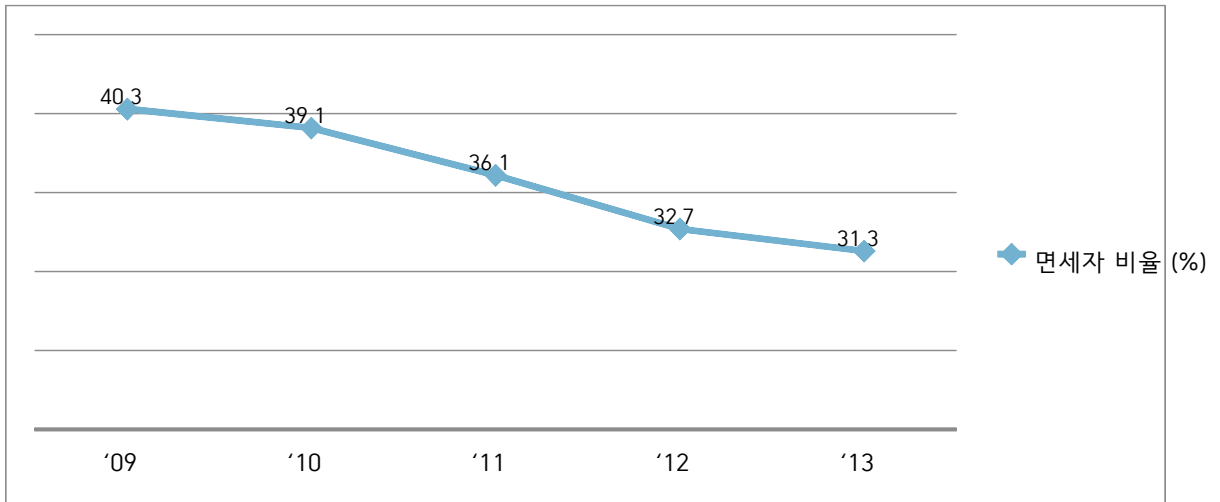
#### (4)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 분석

- 정부는 조세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조세의 효율성과 형평성뿐만 아니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국민개세주의의 가치를 함께 고려
  - 특히 경제전문가 여론조사('18.3월)에 따르면 소득세에 대해서 '국민개세주의 실현으로 면세자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55.2%)'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한국경제연구원, '18.3월)
- 그간 정부는 소득세제 운영에 있어 비과세, 감면·공제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를 지속적으로 축소해왔음
  - 소득세 면세자는 '09년 40.3% → '10년 39.1% → '11년 36.1% → '12년 32.7% → '13년 31.3%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 표 23 : '09~'13년 소득세 면세자 비율 > (단위 : %)

분	09	'10	'11	'12	'13
면세자 비율	40.3	39.1	36.1	32.7	31.3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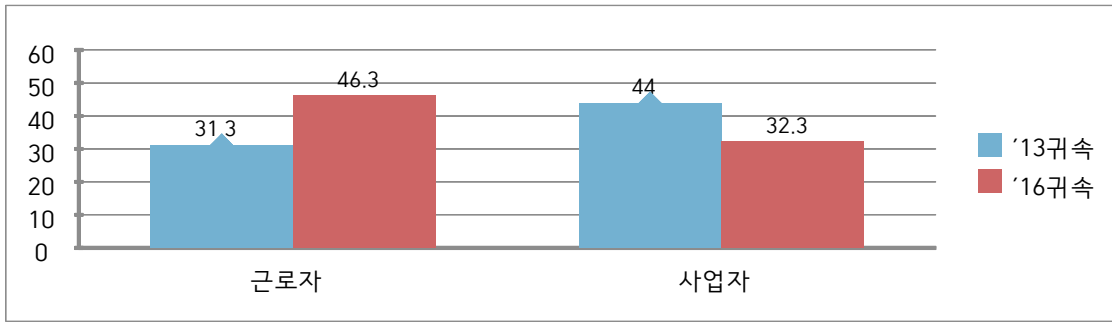
□ 하지만, '13년 소득세 개편에 따라 고소득자들에게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여 소득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근로자 면세자 비중이 '13년 31.3%에서 '16년 46.3%로 큰 폭으로 증가

< 표 24 : '13~'16년 소득세 면세자 비중 >

구 분	면세자 비중	
	'13귀속	'16귀속
근로자	31.3% (1,636만명 중 530만명)	46.3% (1,740만명 중 774만명)
사업자	44.0% (567만명 중 250만명)	32.3% (15귀속) (619만명 중 200만명)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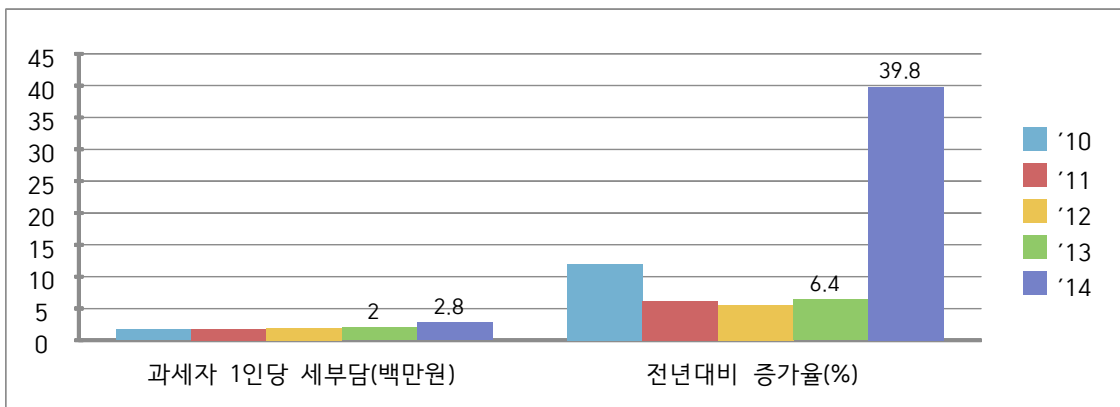


- 다만, 면세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소득세율 인상 등에 따라 과세자 1인당 세부담이 '13년 약 200만원에서 '14년 약 280만원으로 39.8% 증가
  - '10~'11년 증가율은 6.2%, '11~'12년 5.6%, '12~'13년 6.4%으로 '10~'13년 평균 증가를 7.6%과 비교해볼 때 소득세 과세 대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집중도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분석 가능

< 표 25 : '10~'14년 과세자 1인당 세부담 및 증가율 >

구분	'10	'11	'12	'13	'14
과세자 1인당 세부담(백만원)	1.7	1.8	1.9	2.0	2.8
전년대비 증가율(%)	12.0	6.2	5.6	6.4	39.8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 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15.6월)



## 2 주요국의 소득세제 특징 분석

### (1) 세율 체계 및 과세구간 비교

□ (OECD 국가 소득세율 구조) OECD 국가의 경우 단일세율을 적용한 국가부터 19단계까지 다양한 모습을 보임

- 체코·헝가리·에스토니아는 단일 세율 체계이며, 덴마크·슬로바키아 등 4개국은 2단계 세율, 노르웨이·스웨덴·영국 등 5개국은 3단계 세율 체계임
- 4단계 이상의 국가로는 캐나다 등 6개국은 4단계 세율, 프랑스·독일 등 6개국은 5단계 세율, 핀란드·일본·한국은 6단계 세율\*, 룩셈부르크는 19단계로 가장 많은 누진 세율 체계를 보임

\* '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소득세 체계 7단계 누진세율 체계

< 표 26 : OECD 국가 소득세율 구조 비교 ('14년 기준) >

단계	국가수	해당 국가
1	3	체코, 헝가리, 에스토니아
2	4	덴마크, 슬로바키아, 폴란드, 아일랜드
3	5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 그리스, 영국
4	6	캐나다, 뉴질랜드, 터키,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5	6	이탈리아, 호주,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벨기에
6	3	핀란드, 일본, 한국
7	4	스페인, 미국, 칠레, 이스라엘
11	2	스위스, 멕시코
19	1	룩셈부르크

※출처 : OECD Tax Database

□ (OECD 국가 소득세 최고세율 비교) OECD 국가의 최고세율 평균은 35.8%이며, 우리나라(38%)는 미국(39.6%) 등과 유사한 수준으로 35개국 중 18위 수준을 기록

○ OECD 국가 중 오스트리아가 55%로 가장 높고, 스위스는 11.5%로 가장 낮은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을 가짐

< 표 27 : OECD 국가 소득세 최고세율 비교 ('14년 기준) >

순위	국가	소득세율 (%)	순위	국가	소득세율 (%)
1	스위스	11.5	19	미국	39.6
2	체코	15.0	20	칠레	40.0
3	헝가리	15.0	21	아일랜드	40.0
4	에스토니아	20.0	22	룩셈부르크	40.0
5	스페인	22.5	23	이탈리아	43.0
6	라트비아	23.0	24	호주	45.0
7	덴마크	24.1	25	프랑스	45.0
8	노르웨이	24.3	26	독일	45.0
9	슬로바키아	25.0	27	그리스	45.0
10	스웨덴	25.0	28	일본	45.0
11	핀란드	31.8	29	영국	45.0
12	아이슬란드	31.8	30	포르투갈	48.0
13	폴란드	32.0	31	벨기에	50.0
14	캐나다	33.0	32	이스라엘	50.0
15	뉴질랜드	33.0	33	슬로베니아	50.0
16	멕시코	35.0	34	네델란드	52.0
17	터키	35.0	35	오스트리아	55.0
18	한국	38.0		평균	35.8

※ 출처 : OECD Tax Database ('16년 기준)

○ 지방세를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세율은 44% ('17년 기준)로 미국(46.3%), 아이슬란드(46.3%), 영국(45%), 스페인(45%)과 유사한 수준

- 지방세를 포함할 경우 일본(55.9%), 프랑스(54.5%), 캐나다(53.5%) 등 50%를 넘는 OECD 국가가 13개국으로 큰 비중을 차지

< 표 28 : 지방세 포함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 비교 > (단위: %)

분	한국(17)	미국	일본		프랑스	그리스	캐나다	포르투갈
국세 (지방세 포함)	40 (44)	39.6 (46.3)	45 (55.9)	55 (55)	45 (54.5)	45 (54)	33 (53.5)	48 (56.5)
벨기에	네덜란드	핀란드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호주	이탈리아	아일랜드	독일
50 (53.3)	52 (52)	31.75 (51.6)	50 (50)	50 (50)	45 (49.0)	43 (48.8)	40 (48)	45 (47.5)
아이슬란드	영국	룩셈부르크	칠레		멕시코	뉴질랜드	폴란드	덴마크
31.8 (46.3)	45 (45)	40 (43.6)	40 (40)	35 (35.8)	35 (35)	33 (33)	32 (32)	24.08 (55.8)
스웨덴	스페인	스위스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체코	헝가리
25 (57.1)	22.5 (45)	11.5 (41.7)	24.25 (38.7)	25 (25)	23 (23)	20 (20)	15 (15)	15 (15)

※ 출처 : OECD Tax Database ('16년 기준)

- (주변국 소득세 최고세율 비교) 중국(45%)·일본(45%)·대만(45%) 등 주변 경쟁국가의 소득세 최고세율 평균은 34.5%로 우리나라 (40%)는 OECD 국가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

< 표 29 : 주변국 소득세 최고세율 비교 > (단위: %)

구 분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폴	홍콩	평균
최고세율	45	45	45	35	20	17	34.5

\* 자료 : IBFD (Tax Research Platform, 2016자료기준)

□ (OECD 국가 1인당 GDP 대비 최고구간 과표) 각국의 경제규모 등을 감안한 소득세율 수준 비교를 위해 1인당 GDP 대비 소득세 최고구간 과세표준 비율을 분석

- OECD 국가의 평균은 4.8배 수준이며, 우리나라는 4.69배로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며 전체 국가 중 22위
- 영국(5.07배), 독일(6.68배), 미국(7.21배), 일본(9.44배)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배율은 높은 수준은 아님

< 표 30 : OECD 국가 1인당 GDP 대비 최고구간과표 배율 비교 >

순위	국가	최고구간과표 / 1인당GDP	소득세율 (%)	순위	국가	최고구간과표 / 1인당GDP	소득세율 (%)
1	아일랜드	0.57	40.00	19	슬로베니아	3.62	50.00
2	벨기에	1.02	50.00	20	포르투갈	4.47	48.00
3	룩셈부르크	1.08	40.00	21	프랑스	4.57	45.00
4	뉴질랜드	1.24	33.00	22	한국	4.69	38.00
5	덴마크	1.30	24.08	23	영국	5.07	45.00
6	아이슬란드	1.39	31.80	24	이스라엘	5.61	50.00
7	스웨덴	1.41	25.00	25	독일	6.68	45.00
8	노르웨이	1.53	24.25	26	미국	7.21	39.60
9	네델란드	1.61	52.00	27	칠레	9.09	40.00
10	폴란드	1.78	32.00	28	일본	9.44	45.00
11	핀란드	2.29	31.75	29	스위스	9.72	11.50
12	슬로바키아	2.35	25.00	30	멕시코	18.84	35.00
13	그리스	2.45	45.00	31	오스트리아	25.02	55.00
14	스페인	2.49	22.50	32	라트비아	단일세율	23.00
15	호주	2.57	45.00	33	에스토니아	단일세율	20.00
16	이탈리아	2.72	43.00	34	체코	단일세율	15.00
17	터키	3.32	35.00	35	헝가리	단일세율	15.00
18	캐나다	3.58	33.00		평균	4.8	35.8

※출처 : OECD Tax Database ('16년 기준)

## 참고2

## 주요 국가별 소득세 과표구간 및 세율('16년)

	과표	세율(%)	국가	과표	세율(%)
미국 (달러)	~9,275	10	일본 (천엔)	~1,950	5
	9,226~37,650	15		1,951~3,300	10
	37,651~91,150	25		3,301~6,950	20
	91,151~190,150	28		6,951~9,000	23
	190,151~413,350	33		9,001~18,000	33
	413,351~415,050	35		18,001~40,000	40
	415,051~	39.6		40,001~	45
영국 (파운드)	~32,000	20	그리스 (유로)	~20,000	29
	32,001~150,000	40		20,001~30,000	37
	150,001~	45		40,001~	45
독일 (유로)	~8,652	0	캐나다 (캐나다달러)	~45,282	15
	8,653~13,669	14 ~ 42		45,283~90,563	20.5
	13,670~53,665			90,564~140,388	26
	53,666~254,446	42		140,389~200,000	29
	254,447~	45		200,001~	33
프랑스 (유로)	~9,710	0	이탈리아 (유로)	~15,000	23
	9,711~26,818	14		15,001~28,000	27
	26,819~71,898	30		28,001~55,000	38
	71,899~152,260	41		55,001~75,000	41
	152,260~	45		75,001~	43
스페인 (유로)	~12,450	9.5	스웨덴 (크로나)	~430,200	0
	12,451~20,200	12		430,201~625,800	20
	20,201~34,000	15		625,801~	25
	34,001~60,000	18.5	아일랜드 (유로)	~33,800	20
	60,001~	22.5		33,801~	40

\* 자료: OECD Tax Database

## (2) 주요국의 소득세율 변동 동향

- '00년 이후에는 주요 선진국 국가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 기업 및 해외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하여 소득세율을 낮추는 등 세금을 낮추는 정책을 실시
  - OECD 회원국의 평균 소득세율은 '00년 40.3%에서 '08년 35.2%로 4.4%p 낮아졌으며, 우리나라는 '00년 40%에서 '08년 35%로 5%p 인하
- 다만, '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다수의 OECD 국가가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세율을 인상하는 등 정책 기조를 변경
  - 이에 따라 OECD 회원국의 평균 소득세율은 '08년 35.2%에서 '14년 35.9%으로 0.7%p 상승하였으며, 우리나라는 '08년 35%에서 '14년 38%로 3%p 인상하였음

< 표 31 : '00년 이후 OECD 회원국의 소득세율 변화 >

구 분 (연초 기준)	소득세 최고세율 (%)				
	'00	'08	'14	'00 대비	'08 대비
한 국	40	35	38	△2%p	+3%p
OECD 평균	40.3	35.2	35.9	△4.4%p	+0.7%p

\* 자료: OECD tax database([www.oecd.org](http://www.oecd.org))

- OECD 35개국 중 '08년 이후 소득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미국·영국 등 16개국, 인하한 국가는 덴마크·헝가리 등 9개국이며, 10개 국가는 유지한 것으로 분석
  - (소득세율 인상국가, 16개국) 미국(4%p), 영국(5%p), 프랑스(5%p) 등

< 표 32 : '08년 이후 소득세율 인상 OECD 회원국 현황 >

국 가	내 용
미 국	('08) 35% → ('13) 39.6%
영 국	('08) 40% → ('10) 50% → ('13) 45%
프 랑 스	('08) 40% → ('11) 41% → ('12) 45%
오 스트리아	('08) 50% → ('16) 55%
캐 나 다	('08) 29% → ('16) 33%
핀 란 드	('08) 31.5% → ('09) 30.5% → ('10) 30% → ('12) 29.75% → ('13) 31.75%
그 리 스	('08) 40% → ('10) 45% → ('14) 42% → ('16) 45%
아 이슬란드	('08) 22.75% → ('10) 33% → ('11) 31.8%
이 스 라 엘	('08) 47% → ('10) 45% → ('12) 48% → ('14) 50%
일 본	('08) 40% → ('15) 45%
한 국	('08) 35% → ('12) 38% → ('17) 40%
룩셈부르크	('08) 38% → ('11) 39% → ('13) 40%
멕시코	('08) 28% → ('10) 30% → ('14) 35%
포르투갈	('08) 42% → ('10) 45.88% → ('11) 46.5% → ('13) 48%
슬로바키아	('08) 19% → ('13) 25%
슬로베니아	('08) 41% → ('13) 50%

○ (소득세율 인하국가, 9개국) 덴마크(2.4%p), 헝가리(21%p), 폴란드(8%p) 등

< 표 33 : '08년 이후 소득세율 인하 OECD 회원국 현황 >

국 가	내 용
덴 마 크	('08) 26.4% → ('12) 19.6% → ('13) 20.8% → ('14) 21.8% → ('15) 23.0% → ('16) 24.0%
에스토니아	('08) 21% → ('15) 20%
헝 가 리	('08) 36% → ('10) 32% → ('11) 16% → ('16) 15%
아 일 랜 드	('08) 41% → ('15) 40%
라 트 비 아	('08) 25% → ('09) 23% → ('10) 26% → ('11) 25% → ('13) 24% → ('15) 23%
뉴 질 랜 드	('08) 39% → ('10) 35.5% → ('11) 33%
노 르 웨 이	('08) 25.3% → ('12) 25.75% → ('14) 24.95% → ('15) 25.15% → ('16) 24.25%
폴 란 드	('08) 40% → ('09) 32%
스 페 인	('08) 27.13% → ('11) 23.5% → ('12) 30.5% → ('15) 22.5%

○ (소득세율 유지국가, 10개국) 네덜란드(52%), 벨기에(50%), 호주(45%), 독일(45%), 이탈리아(43%), 칠레(40%) 터키(35%), 스웨덴(25%), 체코(15%), 스위스(11.5%)



**참고3**

**OECD 국가별 소득세 최고세율 변화**

가	소득세 최고세율				
	'08	13	'14	'15	'16
호주	45	45	45	45	45
오스트리아	50	50	50	50	55
벨기에	50	50	50	50	50
캐나다	29	29	29	29	33
칠레	40	40	40	40	40
체코	15	15	15	15	15
덴마크	26.48	20.83	21.83	23.08	24.08
에스토니아	21	21	21	20	20
핀란드	31.5	31.75	31.75	31.75	31.75
프랑스	40	45	45	45	45
독일	45	45	45	45	45
그리스	40	42	42	42	45
헝가리	36	16	16	16	15
아이슬란드	22.75	31.8	31.8	31.8	31.8
아일랜드	41	41	41	40	40
이스라엘	47	50	50	50	50
이탈리아	43	43	43	43	43
일본	40	40	40	45	45
<b>한</b> 국	<b>35</b>	<b>38</b>	<b>38</b>	<b>38</b>	<b>38</b>
라트비아	-	-	-	-	23
룩셈부르크	38	40	40	40	40
멕시코	28	30	35	35	35
네덜란드	52	52	52	52	52
뉴질랜드	39	33	33	33	33
노르웨이	25.3	25.75	24.95	25.15	24.25
폴란드	40	32	32	32	32
포르투갈	42	48	48	48	48
슬로바키아	19	25	25	25	25
슬로베니아	41	50	50	50	50
스페인	27.13	30.5	30.5	22.5	22.5
스웨덴	25	25	25	25	25
스위스	11.5	13.2	11.5	11.5	11.5
터키	35	35	35	35	35
영국	40	45	45	45	45
미국	35	39.6	39.6	39.6	39.6
<b>O E C D</b> 평균	<b>35.2</b>	<b>35.8</b>	<b>35.9</b>	<b>35.8</b>	<b>35.8</b>

※ 출처 : OECD tax database

### (3) 소득세 세수 추이 및 세부담 수준 분석

- (OECD 국가 소득세수 비중) '15년도 기준으로 OECD 국가의 GDP 대비 소득세수 비중 평균은 8.4%, 총조세대비 비중 평균은 33.0%로 분석
  - 미국은 GDP·총조세대비 비중이 각각 10.7%, 53.4%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영국·독일·프랑스 등 유럽 국가의 경우에도 각각 8.6~9.9%, 33.2~34.5%로 OECD 국가 평균을 상회
  - 우리나라의 경우 GDP대비 소득세수 비중은 4.4%, 총조세대비 비중은 24.7%으로 나타나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

< 표 34 : '15년 기준 OECD 국가 소득세수 비중 > (단위: %)

구 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OECD
GDP대비(%)	4.4	10.7	6.1('14)	9.1	9.9	8.6	8.4('14)
총조세대비(%)	24.7	53.4	31.5('14)	34.5	43.4	33.2	33.0('14)

\*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16년 기준

- (OECD 국가 소득세수 비중 변화) OECD 국가의 GDP 대비 소득세수 비중은 '07년 8.8%에서 '12년 8.6%로 △0.2%p 소폭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으로 8%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모습
  - 미국의 GDP대비 소득세수 비중은 '07년 10.2%에서 '12년 9.2%로 △1%p 감소
  - 우리나라의 경우 GDP대비 소득세수 비중은 '07년 4.1%에서 '12년 3.7%로 △0.4%p 감소

< 표 35 : OECD 국가 소득세수 비중 변화 > (단위: %)

구분	'07	'08	'09	'10	'11	'12	07~12
호주	10.9	10.1	9.6	9.8	10.3	10.7	0.2%p
오스트리아	9.1	9.6	9.1	9.2	9.2	9.5	+0.4%p
벨기에	11.8	12.2	11.8	12.0	12.1	12.2	+0.4%p
캐나다	12.0	11.7	11.2	10.7	10.9	11.2	△0.8%p
체코	4.0	3.5	3.5	3.3	3.5	3.6	△0.4%p
덴마크	24.7	24.5	25.5	23.7	23.6	23.9	△0.8%p
에스토니아	5.8	6.1	5.6	5.3	5.2	5.3	△0.5%p
핀란드	12.5	12.7	12.7	12.1	12.3	12.6	+0.1%p
프랑스	7.2	7.3	7.1	7.0	7.3	7.9	+0.7%p
독일	8.7	9.2	9.1	8.5	8.8	9.3	+0.5%p
그리스	4.6	4.7	4.8	4.4	4.8	7.0	+2.4%p
헝가리	7.2	7.7	7.4	6.4	4.9	5.3	△1.9%p
아이슬란드	13.1	12.6	12.1	12.2	13.0	13.2	+0.1%p
아일랜드	9.2	8.6	8.4	8.2	8.5	9.1	△0.1%p
이탈리아	10.7	11.1	11.2	11.3	11.1	11.6	+0.7%p
일본	5.6	5.7	5.4	5.1	5.3	5.5	△0.1%p
한국	4.1	3.7	3.4	3.3	3.5	3.7	△0.4%p
룩셈부르크	7.4	8.1	8.1	8.0	8.4	8.4	+1.0%p
네덜란드	7.2	7.0	8.1	8.0	7.7	7.3	+0.1%p
뉴질랜드	14.5	13.6	12.7	11.7	11.6	12.4	△2.1%p
노르웨이	9.5	9.1	10.2	10.1	9.9	9.9	+0.4%p
폴란드	5.2	5.3	4.6	4.4	4.4	4.5	△0.7%p
포르투갈	5.3	5.4	5.5	5.4	6.0	5.8	+0.5%p
슬로바키아	2.5	2.7	2.4	2.3	2.5	2.6	+0.1%p
슬로베니아	5.5	5.7	5.7	5.6	5.6	5.7	+0.2%p
스페인	7.3	6.9	6.5	6.8	7.0	7.2	△0.1%p
스웨덴	13.9	13.1	12.7	12.0	11.7	11.9	△2.0%p
스위스	8.3	8.3	8.7	8.5	8.5	8.5	+0.2%p
터키	4.1	4.0	4.0	3.7	3.8	4.0	△0.1%p
영국	10.2	10.2	9.8	9.4	9.4	9.1	△1.1%p
미국	10.2	9.7	7.8	7.9	9.0	9.2	△1.0%p
OECD 평균	8.8	8.7	8.5	8.2	8.3	8.6	△0.2%p

※출처 : OECD Tax Database

- 다만,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소득세수 비중은 '10년 19.5%에서 '15년 24.3%로 '1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

< 표 36 : 우리나라 총조세 대비 소득세수 비중 추이 > (단위: %)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8.0	17.6	20.2	22.1	20.2	19.6	19.5	20.2	20.9	21.8	23.2	24.3

#### (4) 주요국의 소득재분배 지표 분석

- (주요국의 지니계수 개선율)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소득 재분배 지수인 지니계수를 통해 국제 비교 가능
  -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 및 재정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 개선율은 9.2%로 미국(23.2%) 영국(34.4%), 독일(42%), 프랑스(39.6%)에 비해 크게 낮은 편
    - 다만, 조세 및 재정지출에 따른 소득재분배 이후의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는 0.307로 미국(0.389), 영국(0.344), 일본(0.366) 보다 낮아 절대적인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
  - 미국의 경우 지니계수 개선율이 23.2%이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89로 우리나라보다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는 높아 불평등도가 심화
    - 다만, 독일의 경우 지니계수 개선율이 42%로 최고 수준이고,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 역시 0.293으로 우리나라보다 수직적 형평성이 개선된 소득분포를 나타냄

< 표 37 : 주요국의 지니계수 개선율 >

국 가	연도	민간소득	가처분소득	개선율(%)
한국	'12	0.338	0.307	9.2
캐나다	'11	0.438	0.316	27.9
프랑스	'11	0.512	0.309	39.6
독일	'11	0.506	0.293	42.0
이탈리아	'11	0.502	0.321	36.0
일본	'09	0.488	0.336	31.2
영국	'11	0.525	0.344	34.4
미국	'12	0.506	0.389	23.2

\* 자료: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상위 1% 소득 및 세부담 비중) 각 국가별로 초고소득층인 1% 계층의 소득 비중 분석을 통해 소득 불평등도를 비교·분석

- 우리나라의 상위 1% 소득비중은 10.82%으로 미국(19.04%), 영국(12.6%), 독일(11.86%), 프랑스(13.59%) 등에 비해 낮은 편
- 하지만, 상위 1% 세액비중은 42.80%로 미국(37.8%), 영국(27.6%), 독일(20.34%), 프랑스(39.24%) 보다 높은 최고 수준임
-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 체계가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높아 수직적 형평성을 위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것으로 분석 가능

< 표 38 : 소득 상위 1% 소득 및 세부담 비중 현황 >

국 가	조사연도	소득비중(%)	세액비중(%)
한국	'14	10.82	42.8
미국	'13	19.04	37.8
영국	'13 ~ '14	12.6	27.6
호주	'13 ~ '14	11.96	22
캐나다	'13	11	20.52
독일	'12	11.86	20.34
프랑스	'14	13.59	39.24
핀란드	'13	9.34	34.84
덴마크	'13	8.74	18.89
뉴질랜드	'12	9.06	14.52
싱가폴	'15	14.11	40

\* 자료 : World Top Incomes Database 및 국세통계연보

- (상대적 빈곤율 국제비교)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14.4%로 OECD 평균(11.5%) 보다 높은 수준
- 일본의 상대적 빈곤율은 16.1%, 미국 17.5%, 영국 10.5%, 스웨덴은 9.0%로 조사

< 표 39 : 주요 선진국 상대적 빈곤율 비교 > (단위: %)

한국('14)	일본('12)	미국('14)	영국('14)	스웨덴('14)	OECD 평균
14.4	16.1	17.5	10.5	9.0	11.5

\* 출처 : OECD,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통계청 자료

## (5) 미국 소득세제 최근 현황 분석<sup>6)</sup>

- 미국의 최근 소득세제 개편안은 '16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감세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 감세정책을 통해 개인과 법인의 조세 부담을 낮춤으로써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둠
  - 소득세율 인하, 상속·증여세 폐지 등을 통해 개인의 세부담을 낮추는 한편 법인세율을 인하 및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 비용을 전액 공제함으로써 투자를 활성화하고 법인의 미국 유턴을 지원
- 이와 같은 대선 공약을 기반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17년 4월 2017년 주요 세제개편안을 발표
  - 세제개편안은 ①일자리 창출 ②경제성장 ③중산층 세제지원 강화 ④ 법인세율 인하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전반적 감세정책을 실시하여 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법인세율 인하 등을 통해 기업들의 소득을 미국 내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해외 유보소득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투자 증대를 지원
  -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여력을 높여주고 개인의 소비·저축을 장려 및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여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함
- 다만, 한편으로는 트럼프 정부의 감세정책이 세입 감소로 이어져 미국의 재정적자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문제제기도 있음

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트럼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 및 평가, '17.5.10 발췌·요약

□ 트럼프 정부의 소득세제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 다음과 같음

①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및 구조 간소화) 현행 7단계(10% ~ 39.6%) 누진세율 구조를 3단계(10/25/33%)로 개정하면서, 최고세율을 39.6%에서 33%로 인하를 추진

- '17.12월 미국 상원은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1.1%p 낮춘 38.5%를 적용하는 법안을 통과

< 표 40 : 트럼프 대선공약에서 제시한 소득세율 개편안 > (단위: 달러, %)

						현행 세율	제안 세율
단독신고		부부합산, 적격미망인		세대주신고			
이상	이하	이상	이하	이상	이하		
0	9,225	0	18,450	0	13,150	10	12
9,225	37,450	18,450	74,900	13,150	50,200	15	12
37,450	90,750	74,900	151,200	50,200	129,600	25	25
90,750	189,300	151,200	230,450	129,600	209,850	28	25
189,300	411,500	230,450	411,500	209,850	411,500	33	33
411,500	413,200	411,500	464,850	411,500	439,000	35	33
413,200	-	464,850	-	439,000	-	39.6	33

자료: Tax Foundation, "Details and Analysis of the 2016 House Republican Tax Reform," Table1, 2016.07.

- 최근 일부 G7 주요국 및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소득세율 인하를 발표



< 표 41 : G7국과 우리나라 개인소득세 법정최고세율 >

	세율 (%)				비고
	2013	2014	2015	2016	
미국	39.6	39.6	39.6	39.6	-
일본	40	40	45	45	-
영국	45	45	45	45	-
프랑스	45	45	45	45	-
독일	45	45	45	45	-
이탈리아	43	43	43	43	-
캐나다	29	29	29	29	17 최고세율 인상
한국	38	38	38	38	

주: 캐나다는 17년부터 최고세율이 33%로 인상  
우리나라도 '17년부터 최고세율이 40%로 인상

자료: OECD statistics, Dataset

② (표준공제액 확대) 트럼프 행정부는 표준공제액을 현행 대비 2배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하였으며, 표준공제액 인상으로 소득세를 면제받는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현행 표준공제액('17년 기준)은 독신 6,350달러, 부부합산 신고 시 12,700달러로 개편안에 따르면 독신 12,700달러, 부부합산 신고 시 25,400달러 이하인 소득세는 면세 적용
- 이와 함께 소득세법 단순화를 위해 현재 소득공제를 일부 폐지하여 조세를 간소화하는 한편 자녀와 부양가족에 대한 세액공제는 유지하여 중산층 가정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것으로 발표

- 또한, 주정부·지방정부 납부세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 발표함으로써 주정부 소득세율이 높은 캘리포니아(13.9%), 오리건(9.9%), 미네소타(9.85%), 뉴저지(8.97%), 뉴욕주(8.82%) 등 거주자에 대한 세부담은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③ (상속세 폐지) 소규모사업자 가업에 대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속세 폐지를 제안

- 한편, 현행 미국의 상속세법상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통합공제는 543만달러 한도까지 공제되고 있으나, 이를 상속세 자체를 폐지할 경우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

④ (오바마케어세 폐지) 투자소득에 부과(3.8%)하여 건강보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오바마케어세를 폐지하여 자본투자를 지원

⑤ (최저한세 폐지)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제·감면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최저한세의 폐지를 제안

- 최저한세를 폐지하여 공제·감면을 받은 경우라도 별도로 최저한세를 산출해야 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제거함을 목적으로 추진

### 3 소득세제 관련 정책 제언

#### (1) 현행 조세부담 수준에 대한 정책 제언

□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17.9%, '13년 기준)과 국민부담률(24.3%)는 OECD 평균은 보다 각각 7.2%p, 9.9%p 낮은 수준임

< 표 42 : 우리나라/OECD 조세·국민부담률 수준 >

	조세부담률(2013)	국민부담률(2013)
한국 (A)	17.9%	24.3%
OECD 평균 (B)	25.8%	34.1%
차이 (B-A)	△7.9%	△9.8%

⇒ (정책제언) 이는 OECD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향후 OECD 평균 수준의 조세부담률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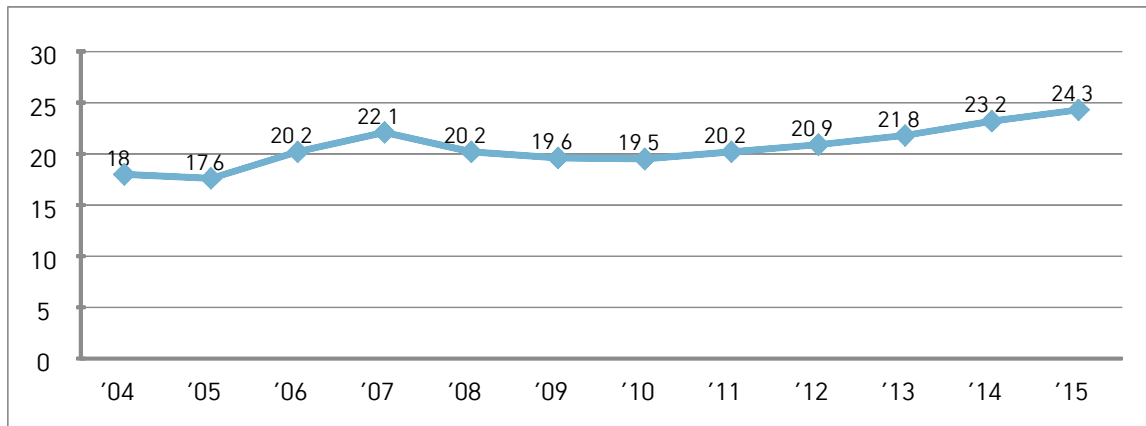
- 참고로, 더불어민주당의 20대 총선 공약으로 조세부담률 수준을 '14년 17.8%수준에서 2%p를 인상할 경우 연간 30조에 가까운 추가 세입을 확보하여 복지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봄
- 또한, 정부도 '17년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세입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을 정책과제로 삼고 있음
- 다만, 추가 부담하는 세금 부담에 대해 어떤 세목으로 어떤 계층에게 부담할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 및 동의를 필요

## (2) 소득세 재원 기능강화에 대한 정책 제언

□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수 비중은 '16년 기준으로 총조세 대비 24.8%, GDP 대비 4.6%을 기록하여 OECD의 총조세 대비 소득세수 비중 평균(33.0%, '14년), GDP 대비(8.4%)에 비해 낮은 편

○ 다만,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소득세수 비중은 '10년 19.5%에서 '15년 24.3%( '16년 24.8%)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그림 9 : '04~'15년 우리나라 총조세 대비 소득세수 비중 추이 >



⇒ (정책제언) OECD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소득세에 대한 조세 세입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이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현행 비과세·감면을 먼저 줄이고, 소득세율 인상은 추가적인 재원 필요시 후순위로 고려할 필요

-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국세 40%, 지방세 포함 44%)은 OECD 국가 최고세율 평균(국세 35.8%, 지방세 포함 43.6%, '16년 기준) 보다 높음<sup>7)</sup>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세율 인상은 그간의 정책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7)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17년), 기획재정부

### (3)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에 대한 정책 제언

-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 및 재정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 개선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 지니계수 개선율은 9.2%로 미국(23.2%), 독일(42%)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시 낮은 수준이고, 상대적 빈곤율 개선율 역시 비슷한 상황
- ⇒ (정책제언)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에 기능 강화와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확대할 필요
  - 정부는 '17년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통해 고소득층 및 대주주 등의 세부담을 높여 고소득층의 과세를 강화하고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서민·중산층의 소득증대 등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할 방침

### (4) 면세자 비율 축소에 대한 정책 제언

- (문제점) 소득세 중 근로소득은 각종 비과세·공제 등으로 실효세율(근로소득 5.0%, 사업소득 14.5%)이 낮고 '13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 면세자 비율이 47%('15년 기준)로 높은 편<sup>8)</sup>
  - 소득세 면세자는 '09년 40.3% → '10년 39.1% → '11년 36.1% → '12년 32.7% → '13년 31.3%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sup>9)</sup>
- ⇒ (정책제언) 비과세 및 공제·감면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 개세주의 실현을 위한 소득세 면세자를 축소할 필요

8)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17년), 기획재정부

9)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III. 법인세제

#### 1 법인세제 변화 과정 및 특징

##### (1) 법인세율 및 과표구간의 변화

- '8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세율 인하를 통한 투자활성화라는 국제 추세를 감안하여 OECD 국가들과 세율 경쟁을 위한 정책 기조가 반영되었음
- '80년의 법인세율은 300만원 이하 과표구간에서는 20%, 300~500만원 30%, 500만원 초과는 40%로 3단계 구조
- '81년에는 5,000만원 이하 25%, 5,000만원 초과 40%로 과표구간을 2단계로 축소
- '82년부터 '88년에는 2번에 걸쳐 1단계 구간은 25→22→20%, 2단계 구간은 40→38→30%로 세율을 인하
- '89년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여 법인세 부담을 완화
- '91년에는 1단계 과표구간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2단계 세율을 30%에서 34%로 인상
- '94년부터 '07년까지는 과표구간 조정없이 1단계 세율을 18→13%, 2단계 세율을 34→25%까지 법인세율을 지속적으로 낮춤

□ 법인세에 부가되는 지방세율을 경우 '95년까지는 7.5%였으나, '96년에 10%로 인상되어 현재까지 유지

< 표 43 : '80~'07년 법인세율 변화 >

사업연도	과 표 구 간	법인세율(%)	지방세율(%)
1980	300만원 이하	20	7.5
	300~500만원 이하	30	
	500만원 초과	40	
1981	5,000만원 이하	25	
	5,000만원 초과	40	
1982	5,000만원 이하	22	
	5,000만원 초과	38	
1983~ 1988	5,000만원 이하	20	
	5,000만원 초과	30	
1989~ 1990	8,000만원 이하	20	
	8,000만원 초과	30	
1991~ 1993	10,000만원 이하	20	
	10,000만원 초과	34	
1994	10,000만원 이하	18	
	10,000만원 초과	32	
1995	10,000만원 이하	18	
	10,000만원 초과	30	
1996~ 2001	10,000만원 이하	16	10
	10,000만원 초과	28	
2002~ 2003	10,000만원 이하	15	
	10,000만원 초과	27	
2004~ 2007	10,000만원 이하	13	
	10,000만원 초과	25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경기회복 및 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감세기조를 형성

- '08년에는 낮은 구간 과표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1단계 법인세율을 13→11%로 2%p 인하
- '09년에는 높은 구간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3%p 인하
- '10년에는 낮은 구간 법인세율을 11%에서 10%로 1%p 인하

< 표 44 : '07~'11년 법인세율 변화 >

구 분		'07년	'08년	'09년	'10~'11년
과표구간		1억원이하 1억원초과	2억원이하 2억원초과		
세 율	최저	13%	11%(△2%p)	11%	10%(△1%p)
	최고	25%	25%	22%(△3%p)	22%

□ 이후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그간의 법인세율을 정상화 추진

- '12년부터 2억원초과 구간의 세율을 2%p인하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억원초과 구간의 세율은 22%로 현행유지 ('11년 세법개정)
- '13년부터 법인세 과표 2억원 ~ 2백억원 초과 중간구간을 신설하여 중간 구간 법인세율을 10→20% 인상하여 3단계 구간으로 운용



- '18년부터 법인세 과표 2천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최고구간 세율을 22→25%로 3%p 인상하여 4단계 구간의 법인세율 구조로 전환

< 표 45 : '12~'18년 법인세율 변화 >

구 분		'12년	'13년	'18년
과표구간		2억원이하 2억원초과	2억원이하 2~200억원 200억원초과	2억원이하 2~200억원 200~2,000억원 2,000억원 초과
세 율	최저	10%	10%	10%
	중간	-	20%	20% / 22%
	최고	22%	22%	25%

□ 법인세율 변화를 각 정부별로 분석해보면 정부별로 다음과 같이 나타남

- 문민정부 : 34% → 28%, 6%p ↓
- 국민의 정부 : 28% → 27%, 1%p ↓
- 참여정부 : 27% → 25%, 2%p ↓
- MB정부 : 25% → 22%, 3%p ↓
- 박근혜정부 : 중간구간 신설
- 문재인정부 : 22% → 25%, 3%p ↑

## (2) 법인세 세수비중 변화

- 법인세 세수는 추세적으로 상승세에 있었으나,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아 '11~'12년 기간을 고점으로 상승 추세
  - 금융위기 영향으로 GDP 성장세가 '10~'11년 정체됨에 따라 법인세수는 '12년 45.9조원을 정점으로 낮아지는 추세
  - 법인세수는 '80년 4,852억원 → '90년 3.2조원 → '00년 17.9조원 → '10년 37.3조원 → '11년 44.9조원 → '12년 45.9조원으로 크게 증가
  - 이후에는 '13년 43.9조원, '14년 42.7조원으로 감소

< 표 46 : '80~'14년 법인세수 실적 변화 >

분	80	'90	'00	'10
경상 GDP 실적(십억원)	39,471	197,712	635,185	1,265,308
법인세 실적(십억원)	485	3,226	17,878	37,268
구 분	'11	'12	'13	'14
경상 GDP 실적(조원)	1,332,681	1,377,457	1,429,445	1,485,078
법인세 실적(조원)	44,873	45,932	43,855	42,650

※ 자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연구」

- GDP 증가율은 '70년대 이후 둔화되는 추세에서 법인세수의 증가율도 점차 감소
  - 법인세 증가율은 '70~'14년 연평균 17.0%이나, '11~'14년 기준 평균 증가율  $\Delta 1.7\%$ , '12~'14년 기준 평균 증가율  $\Delta 3.6\%$ 로 감소

< 표 47 : '80~'14년 법인세수 증가율 변화 >

분	70~'80	'80~'90	'90~'00	'00~'10	'70~'98	'98~'14
경상 GDP 증가율(%)	30.3	17.5	12.4	7.1	20.6	6.7
법인세 증가율(%)	27.6	20.9	18.7	7.6	21.9	9.0
구 분	'07~'14	'10~'14	'11~'14	'12~'14	전 체	
경상 GDP 증가율(%)	5.2	4.1	3.7	3.8	15.3	
법인세 증가율(%)	2.7	3.4	△1.7	△3.6	17.0	

※ 자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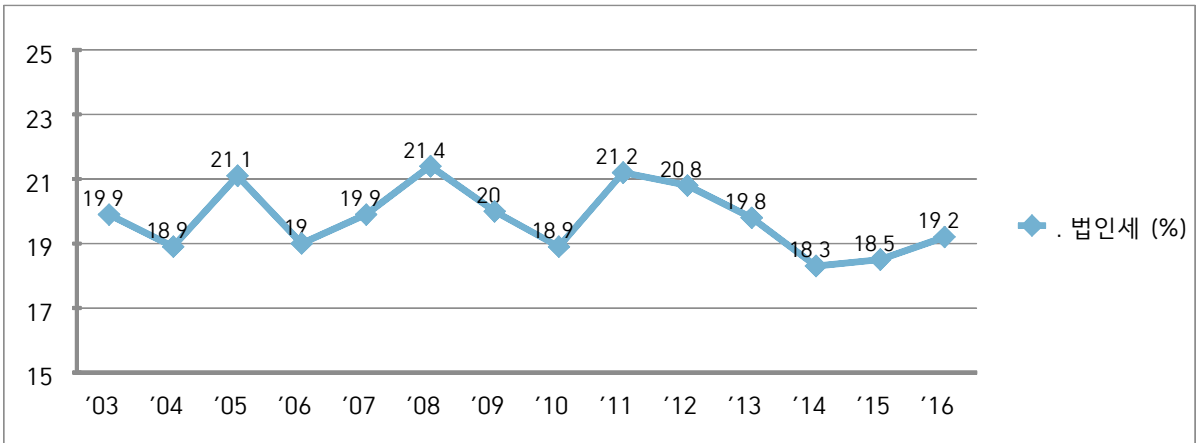
□ (총조세대비 법인세 비중) OECD분류 기준에 따른 총조세대비 법인세 비중은 '03년 19.9%에서 '11년 21.2%로 증가추세

○ 이후 법인세 비중은 '12년 20.8%, '13년 19.8%, '14년 18.3%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15년 18.5%, '16년 19.2% 반등하는 모습을 보임

< 표 48 : '03~'16년 총조세대비 법인세 비중 변화 > (단위: %)

'03	'04	'05	'06	'07	'08	'09
19.9	18.9	21.1	19.0	19.9	21.4	20.0
'10	'11	'12	'13	'14	'15	'16
18.9	21.2	20.8	19.8	18.3	18.5	19.2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및 OECD Tax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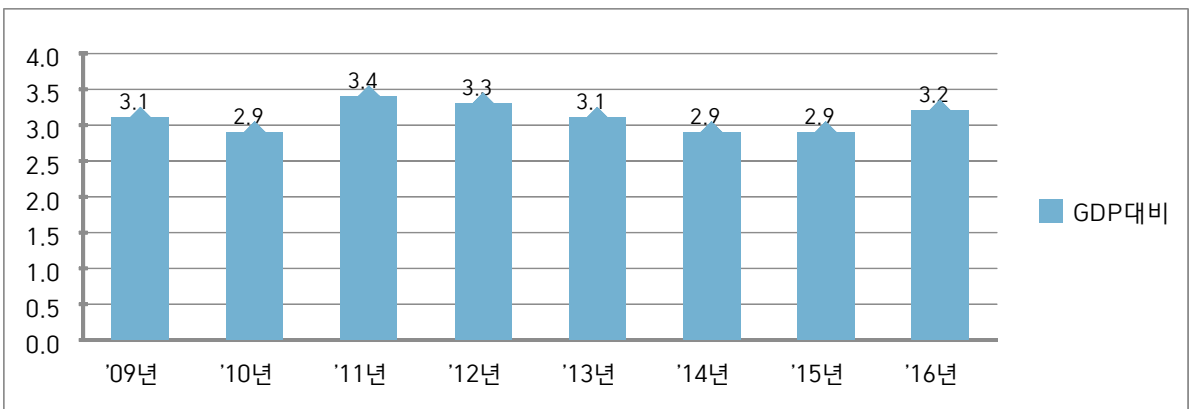
□ (GDP대비 법인세 비중) GDP대비 법인세 비중 역시 '09년 3.1%에서 '11년 3.4%로 증가추세

○ 이후 법인세 비중은 '12년 3.3% → '13년 3.1% → '14~'15년 2.9%로 감소추세를 보이다 '16년 3.2% 반등

< 표 49 : '09~'16년 GDP 대비 법인세 비중 변화 > (단위: %)

09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3.1	2.9	3.4	3.3	3.1	2.9	2.9	3.2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및 OECD Tax database



### (3) 법인세 재분배효과 분석

- '16년 신고기준 전체 법인 64.5만 법인을 기준으로 세액 상위 1%, 5%, 10% 기업 현황을 분석
  - 소득 1% 법인 6,450개의 소득금액은 전체 법인 소득금액의 94.7%를 차지하고 총부담세액의 83%를 납부
  - 소득 5% 법인 32,250개의 소득금액은 전체 법인 소득금액의 110% (결손법인 포함 비중)를 차지하고 총부담세액의 93.6%를 납부
  - 소득 10% 법인 64,506개의 소득금액은 전체 법인 소득금액의 115.2%(결손법인 포함 비중)를 차지하고 총부담세액의 96.7%를 납부

< 표 50 : 소득별 법인세수 분석 > (단위: 개, 억원, %)

구분	신고법인수	소득금액	비중		비중
전체법인	645,061	2,157,277	100	439,468	100
소득 1%	6,450	2,043,128	94.7	364,678	83.0
소득 5%	32,250	2,372,829	110.0	411,382	93.6
소득 10%	64,506	2,486,440	115.2	425,014	96.7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2 주요국의 법인세제 특징 및 시사점

### (1) 세율 체계 및 과세구간 비교

- (OECD 국가 법인세율 구조) OECD 35개 국가는 단일세율(24개국), 2단계 세율(8개국), 3단계 이상(3개국) 등 다양한 구조를 가짐
-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 독일, 영국 등 24개국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표 51 : 단일세율 법인세 구조 OECD 국가 >

국가명	세율(%)	국가명	세율(%)
오스트리아	25	이스라엘	24
칠레	25	이태리	24
체코	19	멕시코	30
덴마크	22	뉴질랜드	28
에스토니아	20	노르웨이	24
핀란드	20	폴란드	19
독일	15	슬로바키아	21
그리스	29	슬로베니아	19
아이슬랜드	20	스웨덴	22
아일랜드	12.5	스위스	8.5
영국	19	스페인	25
터키	20	헝가리	9

※ 자료 : OECD Tax database

- (2단계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 캐나다, 프랑스, 일본 등 8개국으로 22.9%를 차지

< 표 52 : 2단계 세율 법인세 구조 OECD 국가 >

국가명		과세표준	세율(%)
캐나다	중소기업	(CAD) 500,000(4.25억원) 이하	11
		500,000(4.25,억원) 초과	15
	일반법인	1단계 단일세율	15
프랑스	중소기업	(EUR) 38,120(0.47억원) 이하	15
		38,120(0.47억원) 초과	33.3
	일반법인	1단계 단일세율	33.3
일본	중소기업	(JPY) 4백만(0.44억원) 이하	15
		4백만(0.44억원) 초과	23.4
	일반법인	1단계 단일세율	23.4
포르투갈	중소기업	(EUR) 15,000(0.19억원) 이하	17%
	일반법인	1단계 단일세율* * 과표구간에 따라 surtax(3%p, 5%p 7%p) 부가 (EUR) 1,500,000(18.5억원) 이하 0%p 1,500,000(18.5억원) ~ 7,500,000(92.6억원) 3%p 7,500,000(92.6억원) ~ 35,000,000(432.2억원) 5%p ( '14년 신설) 35,000,000(432.2억원) 초과 7%p	21%
호주	중소기업	(AUD) 매출 2,000,000(1,686,400,000원) 이하	28.5
	일반법인	1단계 단일세율	30
라트비아	중소기업	(EUR) 7,000(0.09억원) 이하	12
		7,000(0.09억원) 초과	15
	일반법인	1단계 단일세율	15
룩셈부르크		(EUR) 25,000(0.32억원) 이하	15
		25,000(0.32억원) 초과	19
네덜란드		(EUR) 200,000(2.47억원) 이하	20
		200,000(2.47억원) 초과	25

※ 자료 : OECD Tax database

- (3단계 이상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 우리나라, 벨기에, 미국으로 3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8년 이후 3단계에서 4단계 구간으로 변경

< 표 53 : 3단계 이상 세율 법인세 구조 OECD 국가 >

국가명	과세표준	세율(%)
한국	(KRW) 2억 이하	10
	2억 ~ 200억	20
	200억 초과	22
벨기에	(EUR) 25,000(0.31억원) 이하	24.25
	25,000(0.31억원) ~ 90,000(1.11억원)	31
	90,000(1.11억원) ~ 322,500(3.98,억원)	34.5
	322,500(3.98억원) 초과	33
미국	(USD) 50,000(0.55억원) 이하	
	50,000(0.55억원) ~ 75,000(0.82억원)	15
	75,000(0.82억원) ~ 100,000(1.1억원)	25
	100,000(1.1억원) ~ 335,000(3.67억원)	34
	335,000(3.67억원) ~ 10,000,000(109.5억원)	39
	10,000,000(109.5억원) ~	34
	15,000,000(164.25억원)	35
	15,000,000(164.25억원) ~	38
	18,333,333(200.75억원)	35
18,333,333(200.75억원) 초과		

※ 자료 : OECD Tax database

□ (OECD 국가 법인세 최고세율 비교) '17년 기준 OECD 국가의 최고세율 평균은 22.1%(지방세 포함 24.2%)

- 이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 22%('18년 이후 25%)와 유사한 수준이며, 가장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나라는 미국(35%)로 나타남

-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18위



< 표 54 : OECD 국가 법인세 최고세율 현황 >

순위	국가	법인세율(%)		순위	국가	법인세율(%)	
1	스위스	8.5	(21.1)	18	덴마크	22.0	(22.0)
2	헝가리	9.0	(9.0)	18	한국	22.0	(24.2)
3	아일랜드	12.5	(12.5)	21	일본	23.4	(30.0)
4	라트비아	15.0	(15.0)	22	이스라엘	24.0	(24.0)
4	캐나다	15.0	(26.7)	22	노르웨이	24.0	(24.0)
4	독일	15.0	(30.2)	22	이탈리아	24.0	(27.8)
7	영국	19.0	(19.0)	25	칠레	25.0	(25.0)
7	슬로베니아	19.0	(19.0)	25	오스트리아	25.0	(25.0)
7	체코	19.0	(19.0)	25	네덜란드	25.0	(25.0)
7	폴란드	19.0	(19.0)	25	스페인	25.0	(25.0)
7	룩셈부르크	19.0	(27.1)	29	뉴질랜드	28.0	(28.0)
12	핀란드	20.0	(20.0)	30	그리스	29.0	(29.0)
12	아이슬랜드	20.0	(20.0)	31	호주	30.0	(30.0)
12	터키	20.0	(20.0)	31	멕시코	30.0	(30.0)
12	에스토니아	20.0	(20.0)	33	벨기에	33.0	(34.0)
16	슬로바키아	21.0	(21.0)	34	프랑스	33.3	(34.4)
16	포르투갈	21.0	(29.5)	35	미국	35.0	(38.9)
18	스웨덴	22.0	(22.0)	평균		22.1	(24.2)

\* ( )는 지방세 포함시 ※출처 : OECD Tax Database ('17년 기준)

□ (주변국 법인세 최고세율 비교) '17년 기준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중국 (25%), 일본(23.4%)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대만·싱가폴 (17%), 홍콩(16.5%)과 비교시 다소 높은 수준

< 표 55 : 주변 국가 법인세 최고세율 현황 > (단위: %)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폴	홍콩
25	23.4	17	17	16.5

\* 자료 : OECD Tax Database, IBFD

## (2) 주요국의 법인세율 변동 동향

□ (OECD 국가) 국제적인 조세경쟁 구도 하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국가가 세율 인하

- OECD 평균 법인세율은 '00년 30.2% → '08년 23.9% → '17년 22.1% (1.8%p↓)으로 지속 인하 추세

< 표 56 : '00년 이후 OECD 회원국의 법인세율 변화 > (단위: %, %p)

구 분 (연초 기준)	법인세 최고세율				
	'00	'08	'17	'00 대비	'08 대비
국	28	25	22	△6	△3
OECD 평균	30.2	23.9	22.1	△8.1	△1.8

\* 자료: OECD tax database (www.oecd.org)

- (세율 인하국가, 19개국) '08~'17년 기준으로 법인세율을 인정한 국가는 뉴질랜드, 네덜란드, 스페인 등 19개국임

- 뉴질랜드(28%), 네덜란드(25%), 스페인(25%), 이스라엘(24%), 이탈리아(24%), 노르웨이(24%)의 경우 인하 후에도 '18년 기준 법인세율 (25%) 보다 높거나 유사한 수준

- 일본, 캐나다, 포르투갈의 경우 법인세 이외에도 지방세의 비중이 높아 인하 후 지방세 비중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18년 우리나라 법인세(27.5%, 지방세 포함)보다 높거나 유사한 수준

\* 일본 23.4%(30.0%), 캐나다 15%(26.7%), 포르투갈 21%(29.5%)

-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09년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였으나 '18년 이후 25%로 인상하여 '08년 수준으로 환원

< 표 57 : 최근 법인세율 인하 OECD 회원국 현황 >

국 가	내 용
뉴 질 랜 드	('08) 30% → ('11) 28%
네 델 란 드	('08) 25.5% → ('11) 25%
스 페 인	('08) 30% → ('15) 28% → ('16) 25%
이 스 라 엘	('08) 27% → ('11) 24% → ('12) 25% → ('14) 26.5% → ('16) 25% → ('17) 24%
이 탈 리 아	('08) 27.5% → ('17) 24%
노 르 웨 이	('08) 28% → ('14) 27% → ('16) 25% → ('17) 24%
일 본	('08) 30% → ('12) 25.5% → ('15) 23.9% → ('16) 23.4%
우 리 나 라	('08) 25% → ('09) 22% * '18년 25%로 '08년 수준으로 환원
덴 마 크	('08) 25% → ('14) 24.5% → ('15) 23.5% → ('16) 22%
스 웨 덴	('08) 28% → ('10) 26.3% → ('13) 22%
포 르 투 갈	('08) 25% → ('14) 23% → ('15) 21%
핀 란 드	('08) 26% → ('12) 24.5% → ('14) 20%
에 스토 니 아	('08) 21% → ('15) 20%
영 국	('08) 28% → ('11) 26% → ('12) 24% → ('13) 23% → ('14) 21% → ('15) 20% → ('17) 19%
슬 로 베 니 아	('08) 22% → ('10) 20% → ('13) 17% → ('17) 19%
룩셈부르크	('08) 22% → ('09) 21% → ('17) 19%
체 코	('08) 21% → ('10) 19%
캐 나 다	('08) 19.5% → ('10) 18% → ('11) 16.5% → ('12) 15%
헝 가 리	('08) 16% → ('10) 19% → ('17) 9%

\* 자료: OECD tax database

- (세율 인상국가, 5개국) '08~'17년 기준으로 법인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멕시코, 그리스, 칠레,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5개국임
- 멕시코는 '10년 30%로 2%p 인상하였으며, 칠레·슬로바키아·아이슬란드 역시 각각 2~8%p 인상
- 그리스는 '11년 20%로 5%p 인하 후 2차례에 걸쳐 29%로 재인상

< 표 58: 최근 법인세율 인상 OECD 회원국 현황 >

국 가	내 용
멕시코	('08) 28% → ('10) 30%
그리스	('08) 25% → ('11) 20% → ('13) 26% → ('16) 29%
칠레	('08) 17% → ('11) 20% → ('14) 21% → ('15) 22.5% → ('16) 24% → ('17) 25%
슬로바키아	('08) 19% → ('13) 23% → ('14) 22% → ('17) 21%
아이슬란드	('08) 15% → ('10) 18% → ('11) 20%

\* 자료: OECD tax database

- (세율 유지국가, 10개국) 호주, 오스트리아, 독일, 아일랜드, 폴란드, 스위스, 터키, 미국, 벨기에, 프랑스는 법인세율을 유지
- 다만, 미국의 경우 '17.12월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0%로 15%p 인하하여 '19년부터 적용됨

## 참고4

## OECD 국가별 법인세 최고세율 변화

가	법인세 최고세율					
	'08	'13	'14	'15	'16	'17
호주	30	30	30	30	30	30
오스트리아	25	25	25	25	25	25
벨기에	33	33	33	33	33	33
캐나다	19.5	15	15	15	15	15
칠레	17	20	20	22.5	24	25
체코	21	19	19	19	19	19
덴마크	25	25	24.5	23.5	22	22
에스토니아	21	21	21	20	20	20
핀란드	26	24.5	20	20	20	20
프랑스	33.3	33.3	33.3	33.3	33.3	33.3
독일	15	15	15	15	15	15
그리스	25	26	26	26	29	29
헝가리	16	19	19	19	19	9
아이슬란드	15	20	20	20	20	20
아일랜드	12.5	12.5	12.5	12.5	12.5	12.5
이스라엘	27	25	26.5	26.5	25	24
이탈리아	27.5	27.5	27.5	27.5	27.5	24
일본	30	25.5	25.5	23.9	23.4	23.4
한국	25	22	22	22	22	22
라트비아	-	-	-	-	15	15
룩셈부르크	22	21	21	21	21	19
멕시코	28	30	30	30	30	30
네델란드	25.5	25	25	25	25	25
뉴질랜드	30	28	28	28	28	28
노르웨이	28	28	27	27	25	24
폴란드	19	19	19	19	19	19
포르투갈	25	25	23	21	21	21
슬로바키아	19	23	22	22	22	21
슬로베니아	22	17	17	17	17	19
스페인	30	30	30	28	25	25
스웨덴	28	22	22	22	22	22
스위스	8.5	8.5	8.5	8.5	8.5	8.5
터키	20	20	20	20	20	20
영국	28	23	21	20	20	19
미국	35	35	35	35	35	35
OECD 평균	23.9	23.3	23	22.9	22.5	22.1

※ 출처 : OECD tax database

### (3) 법인세 세수 추이 및 세부담 수준 분석

□ (주요 선진국 법인세수 비중) '15년도 기준으로 OECD 국가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2.9%, 총조세대비 비중은 11.7%임

- 미국은 GDP·총조세대비 비중이 각각 2.2%, 10.9%로 OECD 국가 평균을 약간 하회하는 수준이며, 영국·독일·프랑스 등 유럽 국가의 경우에도 각각 1.7~2.5%, 7.7~9.3%로 OECD 국가 평균을 상회
- 우리나라의 경우 GDP대비 소득세수 비중은 3.2%, 총조세대비 비중은 18.2%으로 나타나 OECD 평균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

< 표 59: OECD 국가 법인세수 비중 ('15년 기준) >

구 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OECD
GDP대비(%)	3.2	2.2	4.3	2.5	1.7	2.1	2.9
총조세대비(%)	18.2	10.9	-	9.3	7.7	8.2	11.7

\*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16 Edition

- 특히,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05년 이후에는 OECD 평균값을 상회하는 수준

< 표 60: '00~'14년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 추이 > (단위: %)

국 가 명	'00년	'05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한 국	3.0 (19위)	3.6 (9위)	3.4 (5위)	3.2 (7위)	3.7 (6위)	3.7 (6위)	3.4 (8위)	3.2 (11위)
OECD 평균	3.3	3.4	2.7	2.7	2.9	2.9	2.9	2.8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OECD 국가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 '14년도 기준으로 OECD 국가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평균 2.8% 수준

- 칠레의 GDP 대비 법인세수의 비중은 4.2%로 가장 높으며 헝가리는 1.5%로 가장 낮음
- 우리나라의 경우 3.2%로 OECD 국가 중 7위 수준

< 표 61: OECD 국가별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 >

번호	국가	GDP대비	번호	국가	GDP대비
1	칠레	4.2%	19	벨기에	3.2%
2	노르웨이	6.6%	20	네덜란드	2.6%
3	멕시코	2.6%	21	터키	1.8%
4	호주	4.7%	22	스웨덴	2.7%
5	뉴질랜드	4.3%	23	스페인	2.1%
6	일본	4.1%	24	폴란드	1.7%
7	한국	3.2%	25	라트비아	1.5%
8	룩셈부르크	4.4%	26	덴마크	2.6%
9	체코	3.5%	27	에스토니아	1.7%
10	슬로바키아	3.3%	28	그리스	1.9%
11	캐나다	3.3%	29	프랑스	2.3%
11	스위스	2.8%	30	이태리	2.2%
13	이스라엘	3.2%	31	오스트리아	2.1%
14	아이슬란드	3.4%	32	독일	1.7%
15	미국	2.2%	32	핀란드	1.9%
15	아일랜드	2.4%	34	슬로베니아	1.4%
17	포르투갈	2.8%	35	헝가리	1.5%
18	영국	2.4%	평균		2.8%

□ (OECD 국가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 변화 추이) OECD 국가의 GDP 대비 법인세 세수 비중은 2.1%('65년) → 2.5%('85년) → 2.7%('95년) → 3.3%('00년)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 세수 비중 역시 1.3%('75년)에서 3.0%('00년)로 꾸준하게 증가

○ 하지만, 미국의 경우 GDP 대비 법인세 세수 비중은 3.9%('65년)에서 2.2%('00년)로 1.7%p 크게 감소

- 독일 역시 GDP 대비 법인세 세수 비중은 2.5%('65년)에서 1.8%('00년)로 0.7%p 감소하였으며, 일본도 같은 기간 0.2%p 감소

< 표 62: '65~'00년 OECD 국가별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 > (단위: %)

국 가 명	'65년	'75년	'85년	'90년	'95년	'00년
호 주	3.4	3.1	2.6	4.0	4.2	6.2
오 스트 리 아	1.8	1.6	1.4	1.4	1.4	2.0
벨 기 에	1.9	2.7	2.1	2.0	2.3	3.1
캐 나 다	3.7	4.3	2.6	2.5	2.8	4.2
칠 레	-	-	-	2.1	2.9	2.1
체 코	-	-	-	-	4.3	3.2
덴 마 크	1.3	1.2	2.2	1.7	2.3	3.2
에 스토 니 아	-	-	-	-	2.4	0.9
핀 란 드	2.4	1.7	1.3	1.9	2.2	5.7
프 랑 스	1.8	1.8	1.9	2.2	2.0	3.0
독 일	2.5	1.5	2.2	1.7	1.0	1.8
그 리 스	0.3	0.6	0.7	1.4	1.8	4.0
형 가 리	-	-	-	-	1.8	2.2



아 이 슬 랜 드	0.5	0.8	0.9	0.8	0.9	1.2
아 일 랜 드	2.2	1.3	1.1	1.6	2.7	3.6
이 스 라 엘	-	-	-	-	2.8	3.3
이 태 리	1.7	1.5	3.0	3.7	3.3	2.8
일 본	3.9	4.2	5.6	6.4	4.2	3.7
한 국	-	1.3(17위)	1.8(15위)	2.4(11위)	2.2(22위)	3.0(19위)
라 트 비 아	-	-	-	-	1.7	1.5
룩 섴 부 르 크	2.9	4.9	6.7	5.4	6.3	6.7
멕 시 코	-	-	-	-	-	-
네 덜 란 드	2.5	2.9	2.8	3.0	3.1	4.0
뉴 질 랜 드	4.8	3.2	2.5	2.3	4.2	4.0
노 르 웨 이	1.1	1.1	7.2	3.6	3.7	8.8
폴 란 드	-	-	-	-	2.7	2.4
포 르 투 갈	-	-	-	2.1	2.3	3.7
슬 로 바 키 아	-	-	-	-	5.9	2.6
슬 로 베 니 아	-	-	-	-	0.5	1.1
스 페 인	1.3	1.2	1.4	2.8	1.7	3.0
스 웨 덴	1.9	1.7	1.6	1.5	2.6	3.7
스 위 스	1.3	1.9	1.6	2.9	2.2	3.8
터 키	0.5	0.6	1.1	1.0	1.1	1.8
영 국	1.3	2.1	4.4	3.3	2.4	3.2
미 국	3.9	2.8	1.9	2.0	2.4	2.2
O E C D 평 균	2.1	2.1	2.5	2.5	2.7	3.3

\* OECD Revenue statistics

- 다만, '05년 이후에는 그 비중이 3.2%에서 '14년 2.8%로 감소 추세로 전환하였으며, 우리나라도 3.6%에서 3.2%로 감소하였으나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유지

< 표 63 : '05~'14년 OECD 국가별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 > (단위: %)

국 가 명	'05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호 주	5.8	4.8	4.7	5.2	5.2	4.9	4.7
오스트리아	2.2	1.6	1.9	2.0	2.0	2.2	2.1
벨기에	3.2	2.3	2.5	2.8	3.0	3.1	3.2
캐나다	3.3	3.3	3.2	3.1	3.2	3.3	3.3
칠레	4.6	4.3	4.0	5.0	5.9	4.4	4.2
체코	4.2	3.4	3.2	3.2	3.3	3.4	3.5
덴마크	3.4	1.9	2.3	2.2	2.6	2.8	2.6
에스토니아	1.4	1.8	1.3	1.2	1.4	1.7	1.7
핀란드	3.2	1.9	2.4	2.6	2.1	2.4	1.9
프랑스	2.4	1.4	2.3	2.6	2.6	2.6	2.3
독일	1.7	1.3	1.5	1.7	1.7	1.8	1.7
그리스	3.2	2.5	2.5	2.1	1.1	1.1	1.9
헝가리	2.1	2.2	1.2	1.2	1.3	1.4	1.5
아이슬란드	1.9	1.7	0.9	1.7	1.9	2.2	3.4
아일랜드	3.2	2.3	2.4	2.2	2.3	2.4	2.4
이스라엘	3.4	2.5	2.6	3.0	2.7	3.5	3.2
이태리	2.2	2.4	2.3	2.2	2.4	2.6	2.2
일본	4.2	2.6	3.2	3.4	3.7	4.0	4.1
한국	3.6(9위)	3.4(5위)	3.2(7위)	3.7(6위)	3.7(6위)	3.4(8위)	3.2(11위)
라트비아	1.9	1.6	1.0	1.4	1.6	1.6	1.5
룩셈부르크	5.9	5.7	5.8	5.1	5.2	4.8	4.4
멕시코	1.4	1.6	1.9	2.1	1.8	2.4	2.6
네덜란드	3.4	2.2	2.3	2.2	2.1	2.2	2.6
뉴질랜드	6.0	3.3	3.7	3.9	4.5	4.4	4.3
노르웨이	11.5	9.0	9.9	10.8	10.3	8.3	6.6
폴란드	2.1	2.3	1.9	2.0	2.1	1.8	1.7
포르투갈	2.6	2.7	2.7	3.1	2.7	3.3	2.8
슬로바키아	2.7	2.5	2.5	2.4	2.4	2.9	3.3
슬로베니아	2.7	1.8	1.8	1.7	1.2	1.2	1.4
스페인	3.9	2.3	1.9	1.9	2.2	2.1	2.1
스웨덴	3.5	2.8	3.3	3.1	2.6	2.7	2.7
스위스	3.0	2.8	2.7	2.8	2.8	2.8	2.8
터키	1.7	1.9	1.9	2.1	2.0	1.9	1.8
영국	3.0	2.6	2.8	2.9	2.7	2.5	2.4
미국	2.9	1.4	1.8	1.8	2.0	2.1	2.2
OECD 평균	3.4	2.7	2.7	2.9	2.9	2.9	2.8

\* OECD Revenue statistics

#### (4) 미국 법인세제 최근 현황 분석<sup>10)</sup>

□ 트럼프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안 목적은 세율 인하 등을 통해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추진

□ 트럼프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 다음과 같음

① (법인세율 인하) 현행 35%에서 15%로 20%p 인하할 것을 발표함

- 현행 미국의 법인세율은 G7국 중 가장 높은 35%로 법인세율을 회피하기 위한 기업들의 조세회피 사례가 많았음

< 표 64 : G7국 및 우리나라 법인세 법정최고세율 > (단위: %)

	13	'14	'15	'16	비고
미국	35	35	35	35	유지
일본	28.05	28.05	23.9	23.4	인하
영국	23	21	20	20	인하
프랑스	38	38	38	34.43	인하
독일	15.83	15.83	15.83	15.83	유지
이탈리아	27.5	27.5	27.5	27.5	유지
캐나다	15	15	15	15	유지
한국	22	22	22	22	유지

: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를 제외함

자료: OECD statistics, Dataset

1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트럼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 및 평가, '17.5.10 발췌·요약

- 기업들의 조세회피행위를 '04년부터 규제안을 만들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법인세율 인하를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함
  -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과격적으로 낮춤으로써 미국을 떠났던 기업들이 국내로 유턴할 것을 미국 정부는 기대
  - 정부안은 미국 상·하원 의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17.12월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0%로 15%p 인하하여 '19년부터 적용됨
- ② (해외유보소득에 대한 일회성 저율과세) 미국 기업의 해외유보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로 일회성 세금(one-time tax)을 부과하여 국내로 자금을 유입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
- 구글, MS, 애플 등 주요 IT 기업의 해외누적소득이 기업들이 보유한 총현금보유액의 약 41%에 달할 것으로 추정<sup>11)</sup>
  - 해외유보소득을 국내로 들여올 경우 유입된 자금을 바탕으로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법인세율 인하(35%→20%)에 따른 재정악화를 만회할 수 있다고 기대
  - '17.12월 미국 의회는 12%의 저율 과세로 해외유보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를 인정

---

11) S&P Global Ratings, "Technology: Awaiting the Return of Cash Stockpiles,"

### 3 | 현행 법인세제 특징 및 주요 정책 과제

#### (1) 법인세 재원 기능강화에 대한 정책 제언

-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 세수 비중은 '16년 기준으로 총조세 대비 19.2%, GDP 대비 3.6%을 기록하여 OECD의 총조세 대비 소득 세수 비중 평균(11.7%, '14년), GDP 대비(2.9%)에 비해 높은 편임

< 표 65 : 우리나라/OECD 법인세수 비중 비교 > (단위: %)

	총조세대비	GDP 대비
한국 (A)	19.2	3.6
OECD 평균 (B)	11.7	2.9
차이 (B-A)	+7.5	+0.7

⇒ (정책제언) 이는 OECD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향후 OECD 평균 수준의 법인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임

- 다만, 우리나라의 법인세 비중이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은 이유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법인세 과세제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법인에 분배되는 영업잉여 비중 (17.8%, '14년 기준)이 OECD 평균(14.4%) 보다 높아 GDP 대비 법인 세수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높다고 분석<sup>12)</sup>

12) 기획재정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17년)

- 이와 같은 경우, 법인세 재원 기능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은 이익 분배 개선을 위한 산업 구조적인 정책 마련이 법인세 최고세율 조정에 우선될 필요

## (2) 법인세 재분배 기능 강화에 대한 정책 제언

-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64.5만 법인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 5%, 10% 법인의 소득금액 비중이 각각 결손법인 소득을 포함할 경우 94.7%, 110.0%, 115.2%를 차지하는 등 소득이 지나치게 편중

< 표 66 : 소득 상위 법인 소득금액 비중 분석 > (단위: %)

구분	신고법인수	소득금액	비중
전체법인	645,061	2,157,277	100
소득 1%	6,450	2,043,128	94.7
소득 5%	32,250	2,372,829	110.0
소득 10%	64,506	2,486,440	115.2

⇒ (정책제언) 비과세·감면을 정비하여 소득 상위 법인 중심의 실효 세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합리화 할 필요

- 그간 정부는 비과세·감면 정비함으로써 등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대기업 위주로 실효 세율을 상승시켜 왔음

-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실효세율은 '11년 17.5% → '12년 18.3% → '13년 18.0% → '14년 18.7% → '15년 19.2% → '16년 19.6%로 지속 상승시켜 왔는바 이와 같은 정책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

## IV. 부가가치세제

### 1 부가가치세제 변화 과정 및 특징

#### (1) 부가가치세 및 세율

-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소비과세 세목을 의미<sup>13)</sup>
  - (재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품·제품·기계·건물 등 모든 유체물과 동력·열 등의 유체물 이외의 무체물을 의미<sup>14)</sup>
  - (용역)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화·시설물·권리의 사용 등 역무 및 기타 행위로서 건설업 등 한국사업표준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역을 의미<sup>15)</sup>
-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다음과 같음
  - ① 건설업, ② 숙박 및 음식점업, ③ 운수업, ④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⑤ 금융 및 보험업, ⑥ 부동산업 및 임대업(단,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 제외), ⑦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⑧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⑨ 교육서비스업, ⑩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⑪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⑫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⑬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생산활동, ⑭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13) 조세개요, 기획재정부, p199

14) 조세개요, 기획재정부, p199

15) 조세개요, 기획재정부, p199

-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해 근거과세의 기반을 확립하여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복잡한 간접세 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해 '75년 도입이 결정된 후 '77.6월부터 시행<sup>16)</sup>
- 부가가치세는 당시 영업세, 물품세, 직물류세, 석유류세, 전기가스세, 통행세, 입장세, 유흥음식점세 등 8개 세목을 대체하여 도입
- 부가가치세율은 기본세율(13%)과 탄력세율(3% 내외)의 구조로 하여 최초 10%로 시행하여 지금까지 10% 세율 유지 (탄력세율은 '88년 폐지)

## (2) 부가가치세 세수비중 변화

- 부가가치세의 경우 시행이후 세율의 변화가 없었으므로, 세수비중의 변화는 경기변동, 면세범위 변화에 영향을 받아 추세가 결정
- '00년 국세대비 세수비중은 25%로 이후 부가가치세는 '02년 30.4%를 최고점으로 하여 잠시 하락하였다가 최근 다시 상승 국면으로 전환
  - GDP대비 비중 역시 '00년 3.65%였던 비중이 '02년 4.15%를 고점으로 최근 4.35%까지 지속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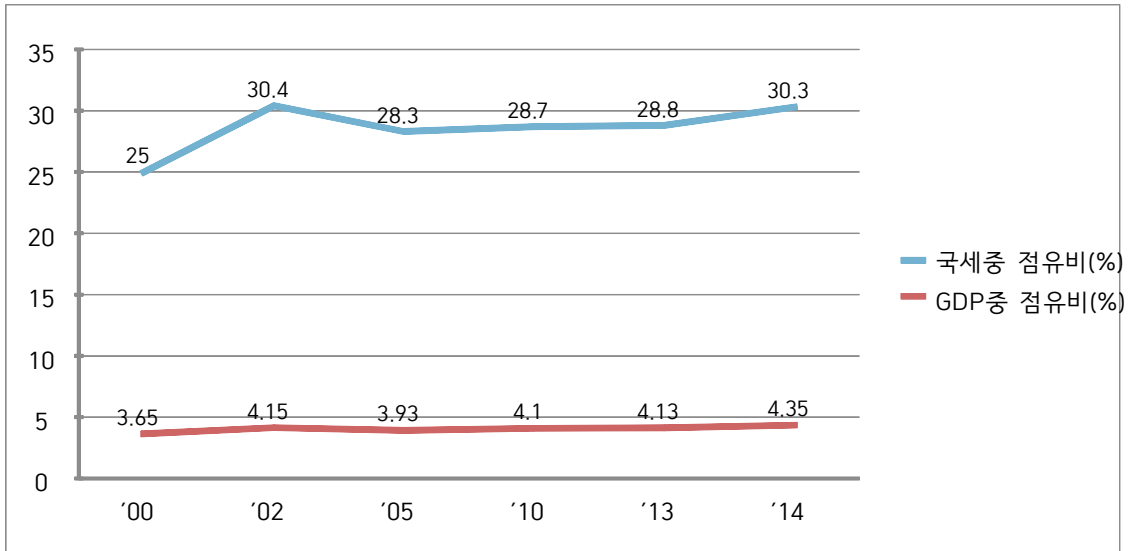
< 표 67 : '00~'14년 부가가치세 세수 비중 변화 > (단위: %)

분	00	'02	'05	'10	'13	'14
부가가치세 (조원)	23.2	31.6	36.1	51.9	59.1	64.6
국세중 점유비(%)	25.0	30.4	28.3	28.7	28.8	30.3
GDP중 점유비(%)	3.65	4.15	3.93	4.10	4.13	4.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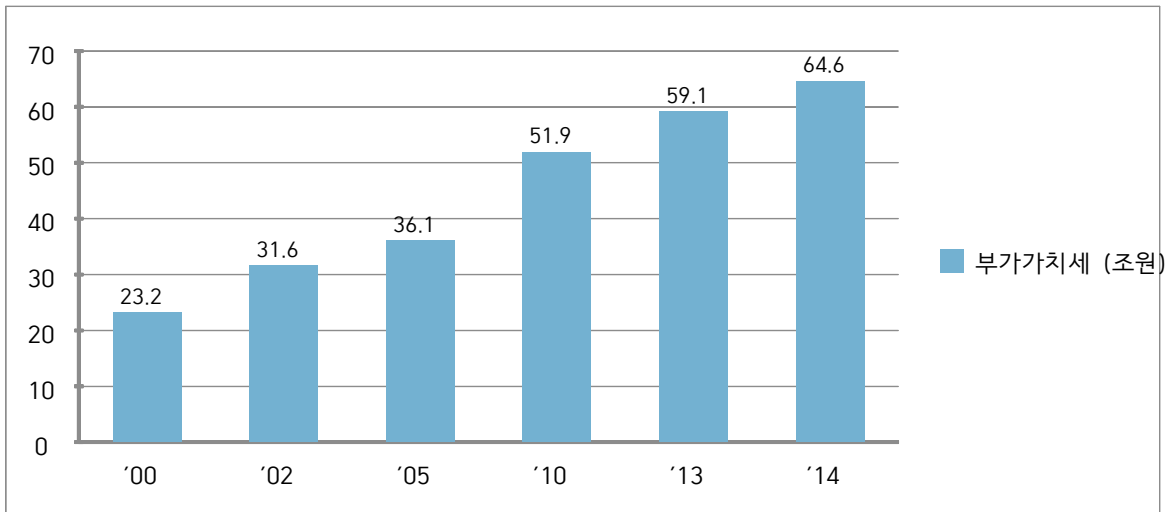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및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16)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연구, 제2편 세목별 발전방향 p137,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부가가치세 세수도 '00년 23.2조원 → '02년 31.6조원 → '05년 36.1조원 → '10년 51.9조원 → '13년 59.1조원 → '14년 64.6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3)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등

-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여러 가지 정책적 목적을 근거로 특정 재화·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를 운용중<sup>17)</sup>
  - 면세를 중간 유통단계에서 면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중복하여 과세하게 되므로 최종소비자의 거래에 대하여 면세
  - 부가가치에 대한 세부담의 면제는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용역, 문화 관련 재화·용역 등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게 됨<sup>18)</sup>
- '90년 의료보건위생용역 중 적출물처리업을 면세하고, '93년 다가구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03년 여성위생용품, '08년 유아용품, '10년 노인주택에 대한 관리비용, '11년 산후조리원 용역에 대한 면세를 허용
  - 반면, '81년에는 부동산임대용역과 특종선박에 대한 여객운송용역, '98년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인적 용역, '11년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애완동물의 진료용역에 대해 과세로 전환
  - (기초 생필품 용역) 미가공품(곡류, 과일, 채소 등), 수돗물, 연탄·무연탄, 생리대, 여객운송용역( 시내·시외버스, 지하철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중
    - 다만, 조미·가공식품, 선박급수업, 유연탄·갈탄·착화탄, 우등고속·항공기·KTX에 대해서는 과세

17)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연구, 제2편 세목별 발전방향 p137~138,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18) 조세개요 2017, 기획재정부, p206

< 표 68 : 기초 생필품 용역 부가가치세 부과 현황 >

면세대상		과세대상
미가공식료품	-곡류, 과일, 채소 등	○ 조미·가공 식료품
○ 수돗물		○ 선박급수업
○ 연탄·무연탄		○ 유연탄·갈탄·착화탄
○ 생리대		
○ 여객운송용역	- 시내·시외버스, 지하철, 일반 여객선, 일반 고속버스(15.4.1~'20.3.31)	○ 우등고속·전세버스, 항공기, KTX

○ (국민후생용역) 의료보건용역(의사·약사·장의업자 용역, 산후조리원 등)과 교육용역(학교·학원강습소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중

- 다만, 의료보건용역 중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등과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며, 교육 용역 중 자동차운전학원, 무도학원에 대해서는 과세중

< 표 69 : 국민후생용역 부가가치세 부과 현황 >

면세대상		과세대상
○ 의료보건용역	- 의사, 약사, 장의업자 용역, 혈액, 산후조리원	○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 ○ 애완동물 진료용역
○ 교육용역	- 허가·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강습소 등의 교육용역	○ 자동차운전학원, 무도학원

- (문화관련 재화·용역) 도서신문방송(도서·신문·인터넷 신문 등), 예술창작품(미술·음악·사진·연극·무용 창작품), 예술문화행사(비영리목적 예술 문화행사 등), 도서관 등 입장에 대해 면세중
- 다만, 도서신문방송 중 광고, 예술창작품 중 골동품, 오락·유흥 시설이 있는 동식물원에 대해서는 과세중

< 표 70 : 문화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현황 >

면세대상		과세대상
도서·신문·방송	-도서, 신문, 인터넷 신문, 잡지, 뉴스 통신, 관보	○광고, 도서·신문 등의 인쇄제작 용역
○ 예술창작품	-미술·음악·사진·연극·무용 창작품	○골동품, 모방제작 미술품
○ 예술·문화행사 등	-비영리목적의 예술·문화 행사, 비직업 운동경기	
○ 도서관 등 입장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	○오락·유흥시설이 있는 동물원·식물원

- (생산요소) 토지의 매매, 주택임대, 금융보험용역(은행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등)과 문화예술관련 인적 용역에 대해 면세중
- 다만, 토지의 임대, 일반건축물, 금융보험용역 중 보호예수·투자자문업·보험계리, 결혼상담용역 등에 대해서는 과세중

< 표 71 : 생산요소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현황 >

면세대상		과세대상
토지	-토지의 매매	○ 토지의 임대
○ 주택 임대	-주택과 그 부속토지 임대	○ 일반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임대
○ 금융보험용역	-대부분의 은행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등	○ 보호예수, 투자자문업, 보험계리 등
○ 문화·예술관련 인적용역	-직업운동가·가수 등의 인적용역, 외판원 등	○ 결혼상담용역, 설계·기술·조사·검사 용역

○ (기타) 우표, 제조담배(200원 이하), 국가·지자체 공익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해서는 면세

- 다만, 수집용 우표, 200원 초과 일반담배 등에 대해서는 과세

< 표 72 : 기타 물품 부가가치세 부과 현황 >

면세대상		과세대상
○ 우표 등	-우표·인지·증지·복권·공중전화	○ 수집용 우표, 면세복권·승마투표권 판매 수수료
○ 제조담배	-200원 이하 담배, 특수용 담배(대통령, 군인 등)	○ 200원 초과 일반 담배
○ 국가·지자체·공익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 부동산임대업, 소포 우편물 방문 접수·배달
○ 국가·지자체·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		○ 기부채납에 따른 사용 수익권 허가 등 유상공급

## 2 주요국의 부가가치세제 특징 및 시사점

### (1) 세율 체계 비교

- (OECD 국가 부가가치세율 현황) OECD 회원국(35개국) 중 미국을 제외한 34개국이 부가가치세를 도입
  - 미국은 Sales Tax를 지방세 형태로 부과하고 있으며, 주(州)마다 다른 세율을 적용
  - 회원국들의 표준세율 평균은 '80년(16개국) 16.1%에서 '16년(35개국) 19.2%으로 3.1%p 상승
  - 헝가리가 27%로 가장 높으며, 캐나다가 5%로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 중임. 우리나라는 10%로 일본(8%)·스위스(8%)·호주(10%)와 함께 낮은 편에 속함

< 표 73 : OECD 국가별 부가가치세 부과 현황 >

국 가	세율(%)	국 가	세율(%)	국 가	세율(%)
캐나다	5.0	프랑스	20.0	이탈리아	22.0
일본	8.0	영국	20.0	폴란드	23.0
스위스	8.0	슬로바키아	20.0	아일랜드	23.0
한국	10.0	오스트리아	20.0	그리스	23.0
호주	10.0	에스토니아	20.0	포르투갈	23.0
뉴질랜드	15.0	체코	21.0	핀란드	24.0
멕시코	16.0	스페인	21.0	아이슬란드	24.0
룩셈부르크	17.0	벨기에	21.0	덴마크	25.0
이스라엘	17.0	라트비아	21.0	노르웨이	25.0
터키	18.0	네덜란드	21.0	스웨덴	25.0
칠레	19.0	라트비아	21.0	헝가리	27.0
독일	19.0	슬로베니아	22.0	평균	19.2

\* 출처 : OECD Tax Database(OECD.org) 등

□ (주변국 부가가치세율 비교) 주변 아시아 경쟁국의 부가가치세율은 일본(8%), 대만(5%), 싱가포르(7%), 중국(17%)으로 중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이 주변국보다 높은 수준

○ 일본은 최근 5%→8%로 인상('14.4월)하였고, '19.10월부터 10% (음식료품 및 신문은 8%)로 인상 예정

## (2) 주요국의 부가가치세율 변동 동향

□ (OECD 국가) OECD 회원국의 평균 부가가치세율은 '00년 17.8% 대비 '08년 17.7%으로 0.1%p 낮아졌으나, '16년 19.2%로 다시 1.4%p 상승

○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 도입 이후 세율 변동 없이 10% 유지

< 표 74 : '00년 이후 OECD 회원국의 부가가치세율 변화 >

구 분 (연초 기준)	부가가치세율(% , %p)				
	'00	'08	'16	'00년 대비	'08년 대비
국	10	10	10	-	-
OECD 평균	17.8	17.7	19.2	+1.4	+1.5

\* 자료: OECD tax database([www.oecd.org](http://www.oecd.org))

○ 34개국 중 21개국 인상, 12개국 유지, 1개국(아이슬란드) 인하

< 표 75 : '08년 이후 OECD 회원국의 세율 변동 현황 >

구 분	부가가치세율		
	인하	인상	유지
국가 수	1 (2.9%)	21 (61.8%)	12 (35.3%)
세 율 변 동	+1.7%p ( '08, 17.7% '16, 19.2%)		

\* 자료: OECD tax database) ※ '16년 OECD 가입국인 라트비아 제외

- (부가가치세율 인상국가) OECD 국가 중 '09~'16년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프랑스, 일본, 영국 등 21개국으로 동 기간중 '09년 17.6%에서 '16년 19.2%로 평균 1.6%p 인상

< 표 76 : '09~'16년 부가가치세율 인상 OECD 회원국 현황 >

국가	'09	'10	'11	'12	'13	'14	'15	'16
체코	19.0	20.0	20.0	20.0	21.0	21.0	21.0	21.0
에스토니아	18.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핀란드	22.0	22.0	23.0	23.0	24.0	24.0	24.0	24.0
프랑스	19.6	19.6	19.6	19.6	19.6	20.0	20.0	20.0
그리스	19.0	19.0	23.0	23.0	23.0	23.0	23.0	23.0
헝가리	20.0	25.0	25.0	27.0	27.0	27.0	27.0	27.0
아일랜드	21.5	21.0	21.0	23.0	23.0	23.0	23.0	23.0
이스라엘	15.5	16.0	16.0	16.0	17.0	18.0	18.0	17.0
이탈리아	20.0	20.0	20.0	21.0	22.0	22.0	22.0	22.0
일본	5.0	5.0	5.0	5.0	5.0	5.0	8.0	8.0
룩셈부르크	15.0	15.0	15.0	15.0	15.0	15.0	17.0	17.0
멕시코	15.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네덜란드	19.0	19.0	19.0	19.0	21.0	21.0	21.0	21.0
뉴질랜드	12.5	12.5	15.0	15.0	15.0	15.0	15.0	15.0
폴란드	22.0	22.0	23.0	23.0	23.0	23.0	23.0	23.0
포르투갈	20.0	20.0	23.0	23.0	23.0	23.0	23.0	23.0
슬로바키아	19.0	19.0	20.0	20.0	20.0	20.0	20.0	20.0
슬로베니아	20.0	20.0	20.0	20.0	20.0	22.0	22.0	22.0
스페인	16.0	16.0	18.0	18.0	21.0	21.0	21.0	21.0
스위스	7.6	7.6	8.0	8.0	8.0	8.0	8.0	8.0
영국	15.0	17.5	20.0	20.0	20.0	20.0	20.0	20.0
평균	17.6	18.0	18.5	18.7	19.0	19.1	19.2	19.2

\* 출처 : OECD Tax Database(OECD.org) 등



- (부가가치세를 인하국가) OECD 국가 중 '09~'16년 부가가치세를 인하한 나라는 '09년 24.5%에서 '16년 24.0%로 인하한 아이슬란드 1개국에 불과

< 표 77 : '09~'16년 부가가치세율 인상 OECD 회원국 현황 >

국가	'09	'10	'11	'12	'13	'14	'15	'16
아이슬란드	24.5	25.5	25.5	25.5	25.5	25.5	24.0	24.0

\* 출처 : OECD Tax Database(OECD.org) 등

- (부가가치세율 유지국가) OECD 국가 중 '09~'16년 부가가치세율 유지한 국가는 호주, 독일, 한국 등 12개국임

< 표 78 : '09~'16년 부가가치세율 유지 OECD 회원국 현황 >

국가	'09	'10	'11	'12	'13	'14	'15	'16
호주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오스트리아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벨기에	21.0	21.0	21.0	21.0	21.0	21.0	21.0	21.0
캐나다	5.0	5.0	5.0	5.0	5.0	5.0	5.0	5.0
칠레	19.0	19.0	19.0	19.0	19.0	19.0	19.0	19.0
덴마크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독일	19.0	19.0	19.0	19.0	19.0	19.0	19.0	19.0
한국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라트비아	21.0	21.0	22.0	22.0	21.0	21.0	21.0	21.0
노르웨이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스웨덴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터키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평균	17.6	18.0	18.5	18.7	19.0	19.1	19.2	19.2

\* 출처 : OECD Tax Database(OECD.org) 등

**참고5**

**OECD 국가별 부가가치세율 변화**

국 가	부가가치세율				
	'08	'13	'14	'15	'16
호 주	10	10	10	10	10
오 스 트 리 아	20	20	20	20	20
벨 기 에	21	21	21	21	21
캐 나 다	5	5	5	5	5
칠 레	19	19	19	19	19
체 코	19	21	21	21	21
덴 마 크	25	25	25	25	25
에 스 토 니 아	18	20	20	20	20
핀 란 드	22	24	24	24	24
프 랑 스	19.6	19.6	20	20	20
독 일	19	19	19	19	19
그 리 스	19	23	23	23	23
헝 가 리	20	27	27	27	27
아 이 슬 란 드	24.5	25.5	25.5	24	24
아 일 랜 드	21	23	23	23	23
이 스 라 엘	15.5	17	18	18	17
이 탈 리 아	20	21	22	22	22
일 본	5	5	5	8	8
한 국	10	10	10	10	10
라 트 비 아	-	-	-	-	21
룩셈부르크	15	15	15	17	17
멕시코	15	16	16	16	16
네델란드	19	21	21	21	21
뉴질랜드	12.5	15	15	15	15
노르웨이	25	25	25	25	25
폴란드	22	23	23	23	23
포르투갈	21	23	23	23	23
슬로바키아	19	20	20	20	20
슬로베니아	20	20	22	22	22
스페인	16	21	21	21	21
스웨덴	25	25	25	25	25
스위스	7.6	8	8	8	8
터키	18	18	18	18	18
영국	17.5	20	20	20	20
미국	-	-	-	-	-
<b>O E C D 평균</b>	<b>17.7</b>	<b>18.9</b>	<b>19.1</b>	<b>19.2</b>	<b>19.2</b>

### (3) 부가가치세 세수 추이 및 세부담 수준 분석

□ (OECD 국가 일반소비세 비중) '14년도 기준으로 OECD 국가의 총 조세대비 일반소비세 비중은 29.3%임

- 우리나라의 경우 총조세 대비 일반소비세 비중은 24.6%로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
- 미국(10.4%), 일본(20.3%)는 우리나라보다 일반소비세 비중이 낮으나, 영국(26.3%), 프랑스(27.9%), 독일(31%)는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

< 표 79 : '14년 OECD 주요국 총조세 대비 일반소비세 비중 현황 > (단위 : %)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한국	OECD
10.4	20.3	26.3	27.9	31.0	24.6	29.3

\*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2016)

### (4) 외국과의 면세범위 비교

□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는 OECD 국가와 대상 및 목록을 비교할 때 비교적 넓은 것으로 보임

- 다만, OECD 국가와 면세 범위를 비교할 때 EU 국가들의 경우 표준 세율이 20% 이상 높게 설정되어 있고 경감세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함께 고려할 필요<sup>19)</sup>

19)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연구: 세목별 발전방향, 기획재정부/조세재정연구원, p150

- (기초생활품 용역 면세범위 비교)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를 제외한 미가공식품, 수도, 연탄·무연탄, 생리대, 여객운송을 면세하고 있어 기초생활품 용역에 있어서 대체로 넓게 면세 제도를 운용
- 미가공 식품에 대해 영세율·면세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는 호주·캐나다·아일랜드·이스라엘 등 7개 국가에 불과
  - 수도 용역의 경우 영세율·면세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는 호주·멕시코·영국 등 6개 국가이며, 연탄·무연탄의 경우 우리나라만이 면세제도를 운용중
  - 여객운송 용역은 영세율·면세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는 호주·체코·아일랜드·멕시코등 8개 국가로 다른 기초생활품 용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면세제도를 폭넓게 운용

< 표 80 : OECD 국가별 기초생활품 용역 면세범위 비교 >

국가명	표준세율 (%)	기초생활품 용역					
		미가공식품	수도	전기	연탄·무연탄	생리대	여객운송
표준세율 적용 국가		11	15	27	31	26	12
경감세율 적용 국가		16	13	6	2	5	14
영세율 적용 국가		5	3	0	0	2	3
면세 적용 국가		2	3	1	1	1	5
한국	10	면세	면세	표준	면세	면세	면세
호주	10	0%	0%	표준	표준	표준	0%
	20	표준	경감10%	표준	표준	표준	경감10%
벨기에	21	경감6%	경감6%	표준	경감12%	표준	경감 6%
캐나다	5~15	0%	표준	표준	표준	0%	표준
칠레	19	표준	표준	표준	표준	표준	면세
체코	21	경감15%	경감15%	표준	표준	표준	0%
덴마크	25	표준	표준	표준	표준	표준	면세
에스토니아	20	표준	표준	표준	표준	경감9%	표준

국가명	표준 세율 (%)	기초생활품 용역					
		미가공 식료품	수도	전기	연탄· 무연탄	생리대	여객 운송
핀란드	24	경감14%	표준	표준	표준	표준	경감 10%
프랑스	20	경감5.5%	경감5.5%	경감5.5%	표준	경감 5.5%	경감10%
독일	19	경감7%	표준	표준	표준	표준	표준
그리스	23	경감13%	경감13%	경감13%	표준	표준	표준
헝가리	27	표준	표준	표준	표준	표준	표준
	24	표준	면세	면세	표준	표준	경감11%
아일랜드	23	0%	면세	경감3.5%	경감3.5%	0%	면세
이스라엘	17	0%	표준	표준	표준	표준	표준
이탈리아	22	경감4%	경감10%	경감10%	표준	표준	경감10%
일본	8	표준	표준	표준	표준	표준	표준
라트비아	21	표준	표준	표준	표준	표준	경감 12%
룩셈부르크	17	경감3%	경감3%	경감8%	표준	표준	경감3%
멕시코	16	표준	0%	표준	표준	표준	면세
네덜란드	21	경감6%	경감6%	표준	표준	경감6%	경감6%
뉴질랜드	15	표준	표준	표준	표준	표준	표준
노르웨이	25	경감15%	표준	표준	표준	표준	경감 10%
폴란드	23	면세	경감 8%	표준	표준	표준	표준
포르투갈	23	경감 6%	경감 6%	표준	표준	표준	경감 6%
슬로바키아	20	경감10%	표준	표준	표준	경감10%	표준
슬로베니아	22	경감9.5%	경감9.5%	표준	표준	표준	경감9.5%
스페인	21	경감10%	경감10%	표준	표준	표준	경감10%
스웨덴	25	표준	표준	표준	표준	표준	경감6%
스위스	8	경감2.5%	경감2.5%	표준	표준	표준	표준
터키	10	경감1%	표준	표준	표준	표준	표준
영국	20	0%	0%	경감5%	표준	경감5%	0%

□ (국민후생용역 면세범위 비교)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후생용역 중 의료  
보건·비영리교육·영리교육에 대해 폭넓게 면세 제도를 운용

- 의료용역과 비영리교육의 경우 OECD 국가의 대부분이 면세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다만, 영리교육의 경우 면세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는 프랑스·폴란드·  
스위스·영국 등 5개국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적음

< 표 81 : OECD 국가별 국민후생용역 면세범위 비교 >

국가명	표준 세율 (%)	국민후생용역		
		의료 보건	비영리 교육	영리 교육
표준세율 적용 국가		3	3	30
경감세율 적용 국가		1	0	0
영세율 적용 국가		1	1	0
면세 적용 국가		29	30	5
한국	10	면세	면세	면세
호주	10	0%	0%	표준
오스트리아	20	경감10%	면세	표준
벨기에	21	면세	면세	표준
캐나다	5~15	면세	면세	표준
칠레	19	표준	표준	표준
체코	21	면세	면세	표준
덴마크	25	면세	면세	표준
에스토니아	20	면세	면세	표준
핀란드	24	면세	면세	표준
프랑스	20	면세	면세	면세
독일	19	면세	면세	표준
그리스	23	면세	면세	표준
헝가리	27	면세	면세	표준
아이슬란드	24	면세	면세	표준

국가명	표준 세율 (%)	국민후생용역		
		의료 보건	비영리 교육	영리 교육
아일랜드	23	면세	면세	표준
이스라엘	17	표준	표준	표준
이탈리아	22	면세	면세	표준
일본	8	면세	면세	표준
라트비아	21	면세	면세	표준
룩셈부르크	17	면세	면세	표준
멕시코	16	면세	면세	표준
네덜란드	21	면세	면세	표준
뉴질랜드	15	표준	표준	표준
노르웨이	25	면세	면세	표준
폴란드	23	면세	면세	면세
포르투갈	23	면세	면세	표준
슬로바키아	20	면세	면세	표준
슬로베니아	22	면세	면세	표준
스페인	21	면세	면세	표준
스웨덴	25	면세	면세	표준
스위스	8	면세	면세	면세
터키	10	면세	면세	표준
영국	20	면세	면세	면세

□ (문화 관련 재화·용역 면세범위 비교)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 관련 재화·용역 중 도서·신문·방송·예술창작품·도서관 재화·용역에 대해 폭넓게 면세 제도를 운용

- 도서의 경우 미가공 식품에 대해 영세율·면세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는 아일랜드·노르웨이·영국 등 5개 국가로 상대적으로 한정적으로 운용
- 신문·방송·예술창작품의 경우에도 영세율·면세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는 5~6개 국가로 제한적으로 면세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다만, 도서관 용역의 경우 호주·벨기에·캐나다 등 19개 국가가 폭넓게 면세제도를 운용중

< 표 82 : OECD 국가별 문화 관련 재화·용역 면세범위 비교 >

국가명	표준세율 (%)	문화 관련 재화·용역				
		도서	신문	방송		도서관
표준세율 적용 국가		9	10	21	19	12
경감세율 적용 국가		20	18	6	8	3
영세율 적용 국가		3	3	0	0	1
면세 적용 국가		2	3	7	7	18
OECD1	-	-	-	-	-	-
EU2	-	경감	경감	경감	-	경감
한국	10	면세	면세	면세	면세	면세
호주	10	표준	표준	표준	표준	면세
오스트리아	20	경감10%	표준	경감10%	경감13%	표준
벨기에	21	경감6%	경감6%	표준	경감6%	면세
캐나다	5~15	표준	표준	표준	표준	면세
칠레	19	표준	면세	표준	표준	표준
체코	21	경감10%	표준	면세	표준	표준
덴마크	25	표준	0%	표준	면세	면세
에스토니아	20	경감9%	경감9%	표준	표준	표준



국가명	표준 세율 (%)	문화 관련 재화·용역				
		도서	신문	방송		도서관
핀란드	24	경감10%	경감10%	경감10%	경감10%	표준
프랑스	20	경감10%	표준	표준	표준	표준
독일	19	경감7%	표준	표준	경감7%	면세
그리스	23	경감13%	경감13%	표준	면세	면세
헝가리	27	경감5%	경감5%	면세	표준	표준
아이슬란드	24	경감11%	경감11%	표준	표준	면세
아일랜드	23	0%	경감9%	면세	경감13.5%	경감13.5%
이스라엘	17	표준	표준	표준	표준	표준
이탈리아	22	표준	경감4%	표준	표준	면세
일본	8	표준	표준	표준	표준	표준
라트비아	21	표준	경감12%	표준	표준	표준
룩셈부르크	17	경감3%	경감3%	경감3%	면세	면세
멕시코	16	면세	면세	표준	면세	면세
네덜란드	21	경감6%	경감6%	면세	경감6%	경감6%
뉴질랜드	15	표준	표준	표준	표준	표준
노르웨이	25	0%	0%	경감10%	면세	면세
폴란드	23	경감5%	경감8%	경감8%	표준	면세
포르투갈	23	경감6%	경감6%	표준	표준	면세
슬로바키아	20	경감10%	표준	면세	표준	표준
슬로베니아	22	경감9.5%	경감9.5%	표준	경감9.5%	면세
스페인	21	경감 4%	경감4%	표준	표준	면세
스웨덴	25	경감6%	경감6%	면세	경감12%	경감6%
스위스	8	경감2.5%	경감2.5%	경감2.5%	표준	면세
터키	10	경감8%	경감1%	표준	표준	면세
영국	20	0%	0%	표준	면세	0%

□ (생산요소 및 기타 재화·용역 면세범위 비교)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요소 및 기타 재화·용역 중 토지·주택임대·금융보험·인적용역·우표·저가담배·공중전화·공익단체에 대해 폭넓게 면세 제도를 운용

○ 토지·주택임대·금융보험·인적용역 등 생산요소와 공익단체 용역의 경우 영세율·면세 적용국가가 12~33개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폭넓게 면세제도를 운용중

○ 다만, 저가담배·공중전화의 경우 면세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적용하는 국가가 없음

< 표 83 : OECD 국가별 생산요소 및 기타 재화·용역 면세범위 비교 >

국가명	표준세율	생산요소				기타			
		토지	주택임대	금융보험	인적용역	우표	저가담배	공중전화	공익단체
표준세율 적용 국가		9	4	1	18	17	33	33	7
경감세율 적용 국가		0	2	0	4	1	0	0	1
영세율 적용 국가		1	0	0	0	0	0	0	2
면세 적용 국가		24	28	33	12	16	1	1	24
한국	10	면세	면세	면세	면세	면세	면세	면세	면세
호주	10	표준	면세	면세	표준	표준	표준	표준	0%
오스트리아	20	면세	10%	면세	경감13%	면세	표준	표준	경감10%
벨기에	21	표준	면세	면세	면세	표준	표준	표준	면세
캐나다	5~15	면세	면세	면세	표준	표준	표준	표준	면세
칠레	19	표준	표준	면세	표준	표준	표준	표준	표준
체코	21	면세	면세	면세	표준	면세	표준	표준	표준
덴마크	25	면세	면세	면세	면세	표준	표준	표준	표준
에스토니아	20	면세	면세	면세	표준	면세	표준	표준	면세
핀란드	24	면세	면세	면세	표준	표준	표준	표준	표준

국가명	표준 세율	생산요소				기타			
		토지	주택 임대	금융 보험	인적 용역	우표	저가 담배	공중 전화	공익 단체
프랑스	20	면세	표준	면세	표준	면세	표준	표준	면세
독일	19	면세	면세	면세	표준	표준	표준	표준	면세
그리스	23	면세	면세	면세	면세	표준	표준	표준	면세
헝가리	27	5	면세	면세	표준	면세	표준	표준	면세
아이슬란드	24	표준	면세	면세	면세	표준	표준	표준	면세
아일랜드	23	표준	면세	면세	표준	표준	표준	표준	면세
이스라엘	17	표준	면세	면세	표준	표준	표준	표준	표준
이탈리아	22	표준	면세	면세	표준	경감10%	표준	표준	면세
일본	8	면세	면세	면세	표준	면세	표준	표준	표준
라트비아	21	면세	표준	면세	표준	면세	표준	표준	표준
룩셈부르크	17	면세	면세	면세	표준	면세	표준	표준	면세
멕시코	16	면세	면세	표준	면세	표준	표준	표준	면세
네덜란드	21	면세	면세	면세	면세	표준	표준	표준	면세
뉴질랜드	15	표준	표준	면세	표준	표준	표준	표준	면세
노르웨이	25	면세	면세	면세	표준	면세	표준	표준	면세
폴란드	23	면세	면세	면세	경감%	면세	표준	표준	면세
포르투갈	23	면세	면세	면세	표준	면세	표준	표준	면세
슬로바키아	20	면세	면세	면세	면세	면세	표준	표준	면세
슬로베니아	22	면세	면세	면세	면세	면세	표준	표준	면세
스페인	21	0%	경감10%	면세	경감10%	면세	표준	표준	면세
스웨덴	25	면세	면세	면세	경감6%	표준	표준	표준	면세
스위스	8	면세	면세	면세	면세	표준	표준	표준	면세
터키	10	표준	면세	면세	면세	표준	표준	표준	면세
영국	20	면세	면세	면세	면세	면세	표준	표준	0%

## (5) 미국 부가가치세제 현황 분석<sup>20)</sup>

» 미국의 Sales Tax의 현황 및 특징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복지 체계 및 세제개편 등 재정 관계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미국은 50개주(州) 중 45개주(州) 및 컬럼비아 자치구에서 주(州) 단위의 판매세(Sales Tax)를 부과하고 있으며 모든 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할 때 표시된 물품 대금 외에 별도로 판매세를 지급

○ 미국의 Sales Tax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10%)에 해당하는 간접세의 일종으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부과하지 않고 주(州) 및 지방정부에서 독자적으로 부과·운영하고 있음

○ 소비자는 영수증에 인쇄된 세금 부담을 볼 수 있어 일상생활에서 직접적이고 빈번하게 접하게 되는 세목중 하나임 (예시 : 참고2)

□ 미국의 판매세(Sales Tax) 현황 분석

○ 주요 특징 (key findings)

- 45개 주와 컬럼비아 자치구에서 주(州) 단위의 판매세를 부과

- 주 정부 아래의 지방단위의 판매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주는 총 38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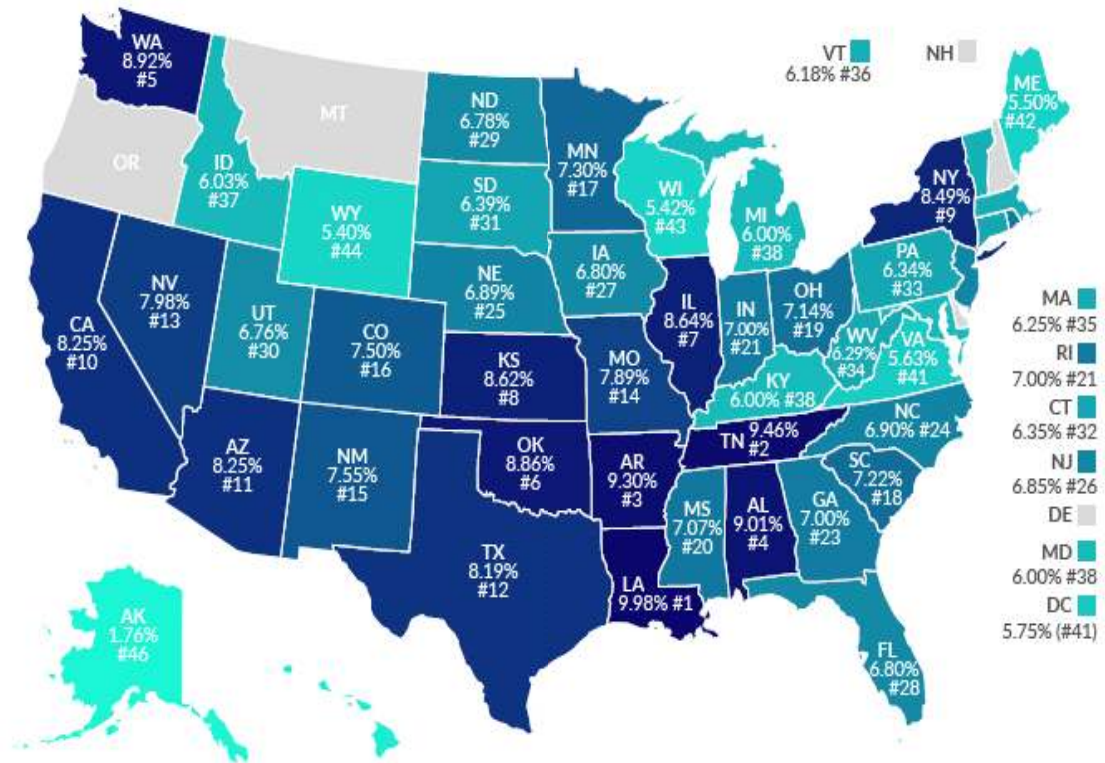
- 총 판매세(state and local sales tax) 세율이 가장 높은 상위 5개 주는 루지애나(9.98%), 테네시(9.46%), 알칸사스(9.30%), 알라바마(9.01%), 워싱턴(8.92%)임

20) tax foundation fiscal fact (2017.1) "State and Local Sales Tax Rates in 2017"

- 하위 5개 주는 알래스카(1.76%), 하와이(4.35%), 와이오밍(5.4%), 위스콘신(5.42%), 메인(5.5%)임
- 주정부 마다 다른 판매세율의 차이가 주정부간 쇼핑이나 온라인 판매에 영향을 크게 미침

## How High Are Sales Taxes in Your State?

Combined State & Average Local Sales Tax Rates, Jan. 1 2017



### ○ 주(州) 정부 세율 현황

- 캘리포니아 주정부 세율이 7.25%로 가장 높음. 두 번째로 높은 주는 7%로 인디애나, 미시시피, 로드아일랜드, 테네시 주로 나타남

- 영세율(0%)을 제외한 가장 세율이 낮은 주는 콜로라도로 2.9%이고, 그 뒤로 알라바마, 조지아, 하와이, 뉴욕주, 와이오밍이 4%임
-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세율이 소폭 감소(7.5→7.25%)하였으며, 뉴저지 주의 경우에도 세제개편(a broader tax reform)의 일환으로 소폭 감소(7% → 6.875% → 6.625('18년 예정))하였으며, 그 밖의 주는 변화 없음

○ 지방정부 판매세율 현황

- 지방단위(cities & counties) 평균세율이 높은 상위 5개 주는 알라바마(5.01%), 루지애나(4.98%), 콜로라도(4.60%), 뉴욕주(4.49%), 오클라호마(4.36%) 순서임
- 캘리포니아의 일부 도시 및 카운티 유권자들은 운송 및 법 집행을 위한 자금 모집을 위해 세율을 올리기도 함
  - \* (예) 산호세(San Jose)의 경우 합산세율을 8.75%에서 9.25%로 인상
- 뉴저지의 살렘 카운티(Salem County)의 경우 판매세를 면제하고 있는 인근 지역 델라웨어주와 경쟁을 위해 주(州) 단위 판매세(6.875%)를 면제하고 절반 규모의 지방 판매세(3.4375%)를 부과

□ 판매세율을 정하는 경쟁(competition)의 역할

-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판매세율은 주 정부 및 지방정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인근 지역의 판매세율의 차이는 지역 주민들의 소비 행태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 \* (예) 시카고 주민의 경우 높은 판매세(10.25%) 판매세로 소비자들은 인근 지역이나 온라인으로 주요 물품을 구매한다는 증거가 제시

- 주 단위 수준에서는 인근 주(州)와의 세율을 비교하여 경계 지역 밖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 \* (예) 1950년 이후 벌몬트주(6%)의 경우 1인당 판매가 정체되어 있는 반면 인근 주인 뉴햄프셔(0%)의 경우 3배 이상이 늘어났으며, 델라웨어 주의 경우 고속도로에 “쇼핑 면세(Home of Tax-Free Shopping)” 표지판을 부착

## □ 시사점

- 주 정부 또는 지방정부는 인근지역과의 세율 격차가 커질 경우 판매 감소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판매세율을 올리는데 신중을 해야 함
  - 많은 요소들이 사업장의 위치나 사업투자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판매세는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 수단임
- 각 지방정부 단위의 판매세 현황을 비교할 때 단순히 세율뿐만 아니라 세율 구조(the structure of sales taxes)도 비교할 필요
  - 대부분의 경우 식료품에 대해서는 면세(0%)를 하나, 일부는 상한선을 두거나 다른 물품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음
  - 일부 주의 경우 옷(clothing)에 면세를 하거나 세율을 낮춰줌
- 판매세는 전체 세목 중의 하나이며 각 주의 차이는 전체 세목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비교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워싱턴 주의 경우 높은 판매세율을 가지고 있지만 소득세(income tax)는 없는 반면, 오레곤 주의 경우 판매세를 없고 높은 소득세를 주민들에게 부과

## 참고6

## 미국 판매세 현황('17.1월 기준)

State	주정부 판매세	순위	지방 판매세	합계	합계 순위
Alabama	4.00%	40	5.01%	9.01%	4
Alaska	0.00%	46	1.76%	1.76%	46
Arizona	5.60%	28	2.65%	8.25%	11
Arkansas	6.50%	9	2.80%	9.30%	3
California	7.25%	1	1.00%	8.25%	10
Colorado	2.90%	45	4.60%	7.50%	16
Connecticut	6.35%	12	0.00%	6.35%	32
Delaware	0.00%	46	0.00%	0.00%	47
Florida	6.00%	16	0.80%	6.80%	28
Georgia	4.00%	40	3.00%	7.00%	23
Hawaii	4.00%	40	0.35%	4.35%	45
Idaho	6.00%	16	0.03%	6.03%	37
Illinois	6.25%	13	2.39%	8.64%	7
Indiana	7.00%	2	0.00%	7.00%	21
Iowa	6.00%	16	0.80%	6.80%	27
Kansas	6.50%	9	2.12%	8.62%	8
Kentucky	6.00%	16	0.00%	6.00%	38
Louisiana	5.00%	33	4.98%	9.98%	1
Maine	5.50%	29	0.00%	5.50%	42
Maryland	6.00%	16	0.00%	6.00%	38
Massachusetts	6.25%	13	0.00%	6.25%	35
Michigan	6.00%	16	0.00%	6.00%	38
Minnesota	6.875%	6	0.42%	7.30%	17
Mississippi	7.00%	2	0.07%	7.07%	20
Missouri	4.225%	39	3.66%	7.89%	14
Montana	0.00%	46	0.00%	0.00%	47



Nebraska	5.50%	29	1.39%	6.89%	25
Nevada	6.85%	8	1.13%	7.98%	13
New Hampshire	0.00%	46	0.00%	0.00%	47
New Jersey	6.875%	6	-0.03%	6.85%	26
New Mexico	5.125%	32	2.43%	7.55%	15
New York	4.00%	40	4.49%	8.49%	9
North Carolina	4.75%	36	2.15%	6.90%	24
North Dakota	5.00%	33	1.78%	6.78%	29
Ohio	5.75%	27	1.39%	7.14%	19
Oklahoma	4.50%	37	4.36%	8.86%	6
Oregon	0.00%	46	0.00%	0.00%	47
Pennsylvania	6.00%	16	0.34%	6.34%	33
Rhode Island	7.00%	2	0.00%	7.00%	21
South Carolina	6.00%	16	1.22%	7.22%	18
South Dakota	4.50%	37	1.89%	6.39%	31
Tennessee	7.00%	2	2.46%	9.46%	2
Texas	6.25%	13	1.94%	8.19%	12
Utah	5.95%	26	0.81%	6.76%	30
Vermont	6.00%	16	0.18%	6.18%	36
Virginia	5.30%	31	0.33%	5.63%	41
Washington	6.50%	9	2.42%	8.92%	5
West Virginia	6.00%	16	0.29%	6.29%	34
Wisconsin	5.00%	33	0.42%	5.42%	43
Wyoming	4.00%	40	1.40%	5.40%	44
D.C.	5.75%	(27)	0.00%	5.75%	(41)

### 3 현행 부가가치세제 특징 및 주요 정책 과제

#### (1) 부가가치세 재원 기능강화에 대한 정책 제언

-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세수 비중은 '16년 기준으로 총조세 대비 22.3%, GDP 대비 4.2%을 기록하여 OECD의 총조세 대비 소득세수 비중 평균(29.3%, '14년), GDP 대비(7.0%)에 비해 낮은 편임
  - 또한, 부가가치세율도 '77년 부가가치세 도입이후 10% 세율을 한 차례도 변경하지 않았으며, OECD 회원국 평균 부가가치세율 19.2%의 절반 수준에 불과
- ⇒ (정책제언) 이는 OECD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향후 OECD 평균 수준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높일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임
  - 다만,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통일 대비 조세 여력 확보 등 미래 대비 목적과 부가가치세율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등 거시경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

#### (2)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에 대한 정책 제언

-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의 면세제도는 저소득층 지원 등 여러 가지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OECD 국가 등과 비교할 때 광범위하게 운영 중에 있음
  - 하지만, 다양한 정책적 목적을 위해 도입된 면세제도는 다른 한편으로는 자원배분의 중립성을 저해하고 부가가치세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 (정책제언) 부가가치세의 면세제도는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운용하는 것이 자원배분의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며,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정부의 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정부도 중장기조세정책방향을 통해 디지털 경제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개선 방안과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조정 등을 중장기 과제로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음